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國際通商學博士 學位論文

韓國 主要 交易 成長國의 通商障壁 實態
分析 및 對處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rade
barriers of Korea's major trade growing
countries : focusing on Vietnam,
Mexico, and Saudi Arabia



2017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通商行政學科

朴 鍾 河

본 논문을 박종하의 국제통상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2월 21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目 次

List of Tables	iv
List of Figures	v
Abstract	vi

第 1 章 序 論

1.1 研究의 背景과 目的	1
1.2 研究의 範圍와 方法	3
1.3 研究對象의 選定	4

第 2 章 研究 및 分析의 模型

2.1 通商規制의 目的	9
2.2 通商規制의 手段	12
2.3 研究의 흐름도	26

第 3 章 韓國 主要 交易 成長國의 通商障壁

3.1 베트남	27
3.1.1 國家特徵	27
3.1.2 通商環境 實態	30
3.2 인도	48
3.2.1 國家特徵	48
3.2.2 通商環境 實態	51
3.3 멕시코	74
3.3.1 國家特徵	74
3.3.2 通商環境 實態	77

3.4 사우디아라비아	97
3.4.1 國家特徵	97
3.4.2 通商環境 實態	100
第 4 章 通商障壁의 分析 및 評價	
4.1 關稅率 政策	121
4.2 輸入規制	124
4.3 原產地管理 制度	129
4.4 知識財產權 保護	131
4.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	133
4.6 環境關聯 規制	135
第 5 章 對處方案	
5.1 通商外交의 擴大 및 強化	139
5.2 公正한 貿易慣行 定着	141
5.3 FTA의 持續的 擴大 推進	144
5.4 地域的·宗教的 特殊性 提高	147
第 6 章 結 論	149
參考文獻	153

List of Tables

Table 1	연구대상 1차 후보군(1995·2005·2015년 수출 30대 국가) 현황	4
Table 2	연구대상 2차 후보군(1995년 Vs 2015년 수출순위 변화) 내역	6
Table 3	연구대상국 최종 선정내역	7
Table 4	한국의 관세 등 징수실적 및 총 재정수입액 중 점유비율	10
Table 5	통상규제 목적과 통상규제 수단과의 관계	13
Table 6	GATT체제 하의 무역협상 내역	14
Table 7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	20
Table 8	한-베트남 교역량 변화 추이	29
Table 9	한-베트남 최근 5년간 교역실적	30
Table 10	베트남의 평균관세율 변화 추이	31
Table 11	한-베트남 FTA(2015) 對 한국 주요 품목 양허현황	32
Table 12	베트남 2015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및 한계량	35
Table 13	베트남의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현황	36
Table 14	베트남 품질검사 소관부처 및 대상물품 내역	41
Table 15	한-인도 교역량 변화 추이	50
Table 16	한-인도 최근 5년간 교역실적	50
Table 17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55
Table 18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총 60개 품목)	55
Table 19	인도의 수입전매 품목 리스트(총 22개 품목)	58
Table 20	인도 BIS 필수인증 대상 품목	66
Table 21	한-멕시코 교역량 변화 추이	76
Table 22	한-멕시코 최근 5년간 교역실적	76
Table 23	멕시코의 관세조정(2011. 11.)된 주요 제품	79

Table 24	멕시코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83
Table 25	멕시코의 수입허가 대상 품목	86
Table 26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량 변화 추이	99
Table 27	한-사우디아라비아 최근 5년간 교역실적	100
Table 28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시적 관세율 인하 품목	102
Table 29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103
Table 30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금지 품목	104
Table 31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허가 품목	108
Table 32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 등록제도 개요	118
Table 33	연구대상 국가별 HS Code체계 및 평균 관세율	121
Table 34	연구대상 국가별 시행중인 FTA	121
Table 35	연구대상 국가별 수입금지 대상 품목	124
Table 36	한국의 발효 중인 FTA 현황	145

List of Figures

Fig.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규모 변화 추이	2
Fig. 2	연구대상국 선정기준	4
Fig. 3	관세의 종류	15
Fig. 4	원산지 결정기준	19
Fig. 5	연구의 흐름도	26
Fig. 6	멕시코 NOM 인증마크 문형	95

A Study 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rade barriers of Korea's major trade growing countries : focusing on Vietnam, India, Mexico, and Saudi Arabia

Park, Jong H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economy has been in a period of infinite competition without borders. As a result,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s changing not in political beliefs or ideological barriers, but in the direction of taking advantage of its own interests. The global village is being reorganized into a huge single market, while fierce market competition and hegemonic competition are accelerating. So it is important how we cope with this change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rade environment of countries trading with our country, selects trade partners with large growth potential, and examines the trade barriers that impede trade with Korea. Based on that, we try to contribute to the trade expansion of our country by seeking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m.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target countries are as follows: ① Among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of Korea, export performance for every 10 years in the period of 1995 to 2015 is within 30th place for 20 years, ② Compared with 1995 and 2015 for the 20-year period, the ranking of exports rises more than 10th. Vietnam, India, Mexico and Saudi Arabia, which meet these criteria,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target countries.

The trade barriers of the study countries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tariff rate policy, import regulation, country of origi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BT & SP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case of Vietnam, the tariff rate on imports from Korea has been lowered considerably.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not many barriers in particular in non-tariff sectors. This can be seen as the effect of the Korea-Vietnam FTA.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 in general, not only tariffs but also negotiations on non-tariff areas such as the rules of origin or TBT & SPS are defined beforehand to be barriers to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the conclusion of FTA negotiations seems to have a considerable effect in eliminating or mitigating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the case of India, the tariff barriers were significantly lowered due to the CEPA agreement with Korea. However, import regulations, especially dumping duties and safeguard restrictions, are both world-renowned. These measures are also being taken frequently for Korea. A review of the dumping duties imposed by India on Korea and the safeguard measures on emergency imports initiated a total of 56 dumping duty-related surveys from January 1, 1995 to December 31,

2014, totaling 39 anti-dumping measures. In the same period, 4 safeguard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two cases were subjected to a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in the TBT & SPS sector, it frequently judged the trade goods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as advantageous to their own country, and thus frequently had a dispute with the trading partners, which led to a complaint filed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Agency. This is a measure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in response to the various opening measures of the Indian government and to mitigate the accumulated trade deficit each year.

In Mexico, tariff rates are relatively high among the countries studied in this paper, and the system is diversified. In large measure, capital goods, consumer good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re high in order. In particular, Mexico has a high trade barriers in the TBT sector. Mexico is implementing the NOM, a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For most items, the test certificate of the exporting country is also recognized according to the Mutual Certification Agreement, except for some items. In addition, there are some cases where new items are added without sufficient notice, which is a high barriers to trade. This NOM mark is stipulated to be marked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 mark of the certificate issuing organization (ANCE, NTCE), and it is evaluate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the condition.

In Saudi Arabia, the usual barriers to singularity are ‘halal’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Halal means ‘allowed’ in Arabic, and is a generic term for products allowed to be eaten and used by Muslims under Islamic law. Among meats, halal meat (mainly goat meat, chicken meat, beef, etc.) and ‘cosmetics made from it’ are examples of halal products. On the other hand, it is called “haram“ food, which is prohibited by Muslims such as blurring like alcohol and drugs, pork, dog

meat cat meat, and brutally slaughtered beast meat. As with most Muslim countries, goods that do not meet halal standards in Saudi Arabia are difficult to clear for any reason. In addition, Saudi Arabia has a special prohibition of direct trade with Israel, regardless of trade items.

In addition, common to the four countries studied in this paper is that infring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illegal copying is widespread, and that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being strengthen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mal barriers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he expansion of normal diplomacy. In general, the expansion of diplomacy will not only create the foundation for the conclusion of an FTA, but also serve as a basis for smoothly operating the FTA that has been concluded. It is also a good way to prevent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eforehand and to resolve the frictions that have already occurred.

Second, fair trade practices needed to be settled. Unfair trade is an immoral act that distorts a free and fair trade order and is another criminal act that deceives consumers and can be viewed as a public enemy in international trade. Ultimately, unfair trade undermines the external image of corporations and nations by disturbing the distribution order and distrusting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s of the goods, and provides the other country with the usual regulations. This will lead to frictions in general, which will greatly affect foreign trade. Therefore, it can not be overemphas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practices in enterprises or exporters.

Third, the FTA should be expanded continuously. The FTA is intended

to facilitate trade liberalization by mitigating or abolishing trade barriers between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preferential measures among member countries, it is possible to promote trade in comparative advantage sectors and improve welfare. In particular, the FTA will contribute to the balanc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including preferential measures in the areas of interest to the parties through the negotiations, which is a good way to alleviate trade friction due to intensified trade imbalances.

Fourth, it is raising regional and religious specificity.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but there are specific regulations that exist only in certain regions or religions, regardless of their comparative advantage. For example, it is a 'halal' standard commonly applied in Islamic countries. No matter how good the quality of a product is, if it can not meet the Halal standard, it will be difficult for such a product to enter the market of Islamic countries. Therefore, if you want to enter this market, you should get 'Halal Certification' in advance. If there is such a special area or special religious regulations, such regional and religious peculiarities must be considered.

It is often said that "intelligence is competitiveness." The same applies to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It means that knowing the phenomenon immediately and dealing with it is as important as it is. Looking ahead and actively preparing for such a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will be an indispensable strategy for us to live in an age of infinite competition. We need to constantly observe the trade environment of our trading partners more closely and try to cope with it beforehand.

第 1 章 序 論

1.1 研究의 背景과 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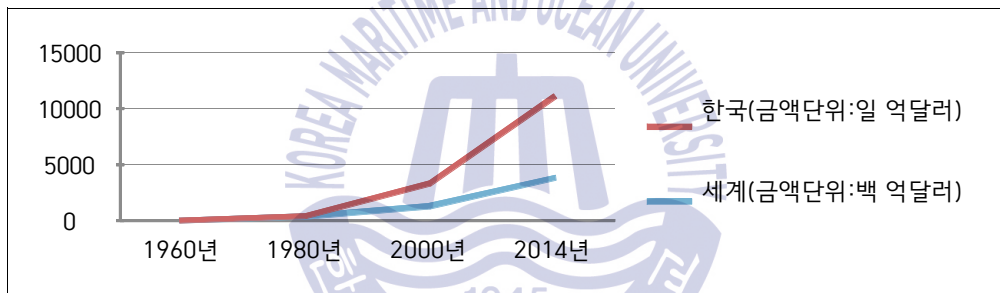
世界經濟 및 通商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경제문제는 정치적 신념과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生存과 相關하며 實利와 利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어제의 敵對者가 오늘의 同伴者가 되고 오늘의 協助者가 내일의 競爭者가 되는 그러한 시대이다. 國際交易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依存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잘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關門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부 依存없이 살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와 相互依存的 關係를 갖지 않고서는 無限競爭에서 뒤떨어 질 수밖에 없고 자국 국민의 消費慾求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¹⁾

되돌아보면, 일본의 強占期를 지난 1950년대 우리나라는 廢墟와 가난 속에 최악의 貧困狀態 그 자체였다. 경제기반은 거의 밑바닥 수준이었고 戰爭으로 말미암아 생활터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국민 대부분이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른바 開發年代라고 불리는 1960년대부터 劣惡한 제반여건을 극복하고 숭한 어려움과 피땀어린 각고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耳目의 집중을 받는 10대 貿易大國의 반열에 올랐다.²⁾ 그러한 과정에서 開發年代 초기에는 생산기반에 투입할 자본이 없어 해외 借款을 도입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1990년대 말에는 外換危機의 뼈아픈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外換危機 극복의

1) N. Gregory Mankiw, 1999. *Principle of Economics*. Dryden Press, pp.49-52.

2) 2014년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 제7위, 무역규모는 세계 제9위이며, 2011년에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클럽국가에 진입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15. 세계 속의 대한민국, 통계로 짚어본 우리나라 위상, 보도자료(10. 28), p.2].

경우 유사과정을 겪는 다른 나라들에게 龜鑑이 되는 事例가 되기도 했다. 특히, 貿易依存도가 7~80%대를 상회³⁾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交易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4년 칠레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發效를 시작으로 동시 다발적 FTA 협정체결을 통하여 새로운 世界經濟環境에 능동적으로 對處하고 있다. 그 결과 貿易規模는 2011년을 기점으로 연간 貿易規模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5년은 世界經濟의 침체로 다소 成長勢가 주춤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한 최근 4년간 연속 貿易規模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우며 <Fig. 1>과 같이 그 上昇勢가 세계 전체무역 上昇勢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Fig.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규모 변화 추이⁴⁾

그러나 우리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이 공든 탑은 현실에 安住하고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원동력과 버팀목인 交易部門이 沈滯되거나 뒷걸음질 치면 그 결과는 不問可知의 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相對(狀況)를 알고 미리 그에 맞게 對處하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좋은 결과는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만들

3) 2015년 70%, 2014년 78%, 2013년 8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 통계자료]

4) 1960년 ; 세계 25백억 달러, 한국 4억 달러/ 1980년 ; 세계 375백억 달러, 한국 398억 달러/ 2000년 ; 세계 1,298백억 달러, 한국 3,328억 달러/ 2014년 ; 세계 3,810백억 달러, 한국 10,980억 달러 [WTO 무역통계자료(<https://www.wto.org/>) 및 관세청 무역통계자료(<https://unipass.customs.go.kr/>)를 근거로 작성].

어 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만들어 나아가야만 된다. 交易 相對國의 通商環境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戰略方案을 마련해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前提 하에 본 研究는 우리나라의 주요 交易國 중에서 특히, 그 交易規模가 크게 成長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成長 潛在力이 큰 交易 相對國을 選定하여 그 나라의 交易環境과 通商障壁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戰略的 對處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研究에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主要 交易 成長國(研究對象으로 選定한 국가)들의 交易環境과 通商障壁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고, 共通點과 特徵 등을 分析해 본 다음, 이에 대한 對處方案을 제시하는 것이 그 核心이다.

본 研究의 目的에 따라 제1장에서는 研究의 背景과 目的, 研究의 範圍와 方法, 研究對象의 選定 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본 研究 및 分析의 模型을 제시하며, 제3장에서는 研究對象 국가의 通商環境에 대해 規制의 手段別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제4장에서는 대상국가의 通商障壁에서 보이는 유형별 共通點 및 特徵 分析, 分析결과 診斷 및 評價를 하며, 제5장에서는 研究對象 국가별 주요 通商障壁을 해결하기 위한 必要戰略 등을 중심으로 對處方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結論을 정리하였다.

研究의 수행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資料에 의한 경우와 實證에 의한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본 研究에서는 사안의 특성과 보다 객관적 信賴性 確保를 위해 자료중심의 研究方法을 採擇하였다.

1.3 研究對象의 選定

研究對象의 選定過程은 개인적인 先入見과 偏見을 배제하고 본 研究의 背景과 目的, 그리고 趣旨에 부합하게 대상을 選定키 위하여 아래 <Fig. 2>와 같은 기준⁵⁾을 설정해 파악한 다음, 그 중에서 대상국가를 후보군으로 압축한 뒤, 본 研究의 趣旨에 합당한 국가를 選定基準에 따라 엄선해 최종 研究對象으로 삼았다.

- ①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995년⁶⁾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10년 단위마다(1995년도, 2005년도, 2015년도)의 수출실적이 모두⁷⁾ 30위⁸⁾ 이내이며,
 - ② 20년 기간 중 전 / 후(1995년도 / 2015년도)를 비교할 때 수출금액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한 국가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가 다수인 경우, 2015년 수출금액 先 순위 4개 국가

<Fig. 2> 연구대상국 선정기준

본 研究對象 選定 단계별과정을 자료를 통해 順序대로 살펴보면, 아래 <Table 1>, <Table 2>, <Table 3>의 내용과 같다.

<Table 1> 연구대상 1차 후보군(1995·2005·2015년 수출 30대 국가) 현황

순위	1995년	2005년	2015년	비고 ⁹⁾
----	-------	-------	-------	------------------

5) 필자가 통상 관련분야 공직생활(세관) 및 산업현장(관세사)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임의로 정한 기준이나 결과의 신뢰성 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항목 및 통계수치를 기본자료로 활용함.

6) 1995년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무역이 무한경쟁시대로 전환하는 계기 즉,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탄력기라고 할 수 있어 그 시작년도를 임의로 정함.

7)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상승세)는 객관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상당기간의 지속된 현상(순위)을 선정요건의 기준으로 적용.

8) 2015년도 수출액 기준 30위 이내까지의 합계가 전체의 약 88%에 해당.

1	미국	중국	중국	○
2	일본	미국	미국	○
3	홍콩	일본	홍콩	○
4	중국	홍콩	베트남	○
5	싱가포르	대만	일본	○
6	독일	독일	싱가포르	○
7	대만	싱가포르	인도	○
8	인도네시아	영국	대만	○
9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
10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
11	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
12	파나마	이탈리아	필리핀	○
13	캐나다	러시아연방	인도네시아	○
14	호주	호주	말레이시아	○
15	네덜란드	멕시코	마셜군도	×
16	브라질	네덜란드	영국	○
17	필리핀	캐나다	태국	○
18	프랑스	베트남	터키	○
19	러시아연방	태국	독일	○
20	베트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	○
21	아랍에미리트연합	프랑스	브라질	○
22	인도	스페인	노르웨이	×
23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러시아연방	○
24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캐나다	○
25	라이베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
26	멕시코	이란	이란	×
27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
28	칠레	핀란드	이탈리아	○
29	노르웨이	라이베리아	폴란드	×
30	터키	벨기에	프랑스	○

자료 : 관세청 연도별 · 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9) 비교란은 2015년도 기준 수출액 30위 이내 국가 중 2005년과 1995년 모두 30위 이내 국가여부를 ○, ×로 표시.

<Table 2> 연구대상 2차 후보군(1995년 Vs 2015년 수출순위 변화) 내역

(금액단위 ; 억 달러/ 순위상승 ; ↑, 순위하강 ; ↓)

순위	2015년		1995년		2015/1995
	국명	수출액	순위	수출액	
1	중국	1,371.2	4	91.6	↑ 3
2	미국	698.3	1	241.5	↓ 1
3	홍콩	304.2	3	106.8	0
4	베트남	277.7	20	13.5	↑ 16
5	일본	255.8	2	170.5	↓ 3
6	싱가포르	150.1	5	66.9	↓ 1
7	인도	120.3	22	11.3	↑ 15
8	대만	120.0	7	38.9	↓ 1
9	멕시코	108.9	26	9.4	↑ 17
10	호주	108.3	14	15.7	↑ 4
11	사우디아라비아	94.8	23	11.1	↑ 12
12	필리핀	83.2	17	14.9	↑ 5
13	인도네시아	78.7	8	29.6	↓ 5
14	말레이시아	77.4	9	29.5	↓ 5
15	마셜군도	75.0	169	0.02	↑ 154
16	영국	73.9	10	28.8	↓ 6
17	태국	63.6	11	24.3	↓ 6
18	터키	62.5	30	5.8	↑ 12
19	독일	62.2	6	59.7	↓ 13
20	아랍에미리트연합	60.8	21	13.2	↑ 1
21	브라질	55.0	16	15.2	↑ 5
22	노르웨이	47.8	29	5.9	↑ 7
23	러시아연방	46.9	19	14.2	↑ 4
24	캐나다	46.2	13	18.0	↓ 11
25	네덜란드	40.2	15	15.5	↓ 10
26	이란	37.3	41	3.6	↑ 15
27	슬로바키아	35.4	104	0.3	↑ 77
28	이탈리아	35.3	24	103.2	↓ 6

29	폴란드	28.1	37	4.1	↑ 8
30	프랑스	25.8	18	14.7	↓ 12
전체	244개국	5,267.6	전체	1,250.6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 검토결과, <Table 1>과 같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기간 중 10년 단위마다(1995년도, 2005년도, 2015년도)의 수출실적이 모두 30위 이내 국가는 15.마셜군도, 22.노르웨이, 26.이란, 27.슬로바키아, 29.폴란드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25개국임이 파악되었고 한편, <Table 2> 내용과 같이 1995년 대비 2015년(20년) 순위 10위 이상 상승한 국가는 4.베트남, 7.인도, 9.멕시코, 11.사우디아라비아, 15.마셜군도, 18.터키, 26.이란, 27.슬로바키아 등 8개국임이 확인되었음

위 1차 후보군 <Table 1>과 2차 후보군 <Table 2>를 연계해 ‘研究對象國 選定基準’에 부합한 4개국을 아래 <Table 3>의 내용과 같이 최종 研究對象國으로 選定하였다.

<Table 3> 연구대상국 최종 선정내역

(단위 : 억 달러)

연번	국명	2015년도		1995년도		순위 상승폭
		수출액	순위	수출액	순위	
1	베트남	277.7	4	13.5	20	16
2	인도	120.3	7	11.3	22	15
3	멕시코	108.9	9	9.4	26	17
4	사우디아라비아	94.8	11	11.1	23	12

- 위 연구대상국 지정학적 위치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2(베트남, 인도), 아메리카 1(멕시코), 중동 1(사우디아라비아)임



第 2 章 研究 및 分析의 模型

2.1 通商規制의 目的¹⁰⁾

通商規制의 目的은 추구하는 觀點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세계 각국들의 共通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國家財政收入의 確保, 둘째, 國內産業의 保護, 셋째, 國家·社會共同體의 安全保護, 넷째, 國民保健 및 環境保護, 다섯째, 對外去來秩序의 維持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¹⁾

2.1.1 國家財政收入의 確保

국가는 관세영역(Customs Boundary)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租稅인 관세를 부과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租稅徵收權이라고 한다. 어느 나라든 그 형태나 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국가 살림의 원천이 되는 租稅徵收權을 採擇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관세 등¹²⁾을 부과하는 주된 目的 가운데 하나는 國家財政收入을 確保하기 위해서이다. 수입 통관 시 稅關에서는 신고한 수입물품의 品目分類를 통해 適正한 세율을 적용하고 평가업무¹³⁾를 통해 관세 등 관련 세금의 부

10) 박종하, 2002. *세계 주요국가의 무역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pp.7-9.

11) 연구자가 30여 년간 무역의 관문인 세관에 재직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관세사로서 수출입물품 통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분류한 형태임

12)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으로는 관세 외에 주세,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성격의 세금이 있다. 내국세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세원포착 용이, 적시부과 가능, 과세절차 간편 등 업무의 편의상 통관 시 세관에서 부과·징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관세법 제4조 참조(이종익, 최천식, 박병목, 2016. *관세법 해설*. 세경사.)]

13) 이명구, 1999.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pp.1~125.

과 금액을 確定한다. 동시에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관세 등을 포탈한 수입자에 대하여서는 포탈한 세액의 별도 추징은 물론, 刑事法的 次元에서도 엄중하게 處罰하게 된다.

관세 등이 財政收入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는 그 나라의 총 財政收入額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財政收入額 중 통관절차 등을 통해 徵收한 관세 등이 아래 <Table 4>의 내용과 같이 1970년에는 14%, 1990년에는 31%, 2015년에는 24%에 해당된다. 관세 등에 의한 財政收入 依存度는 先進國은 비교적 낮고 中·後進國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높은 것이 特徵이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구미 先進國들은 총 財政收入額에 대한 관세의 비중이 비교적 낮고, 開途國이나 後進國 일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Table 4> 한국의 관세 등 징수실적 및 총 재정수입액 중 점유비율

(단위 : 억 원)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관세 등(A)	509	21,751	82,495	231,328	558,860	522,548
총재정수입(B)	3,648	58,077	268,474	929,347	1,777,184	2,201,102
점유율(A/B,%)	14	37	31	25	31	24

자료 : 관세청, 2000. 관세청 30년사, p.725 내용과 관세청 2000년·2010년·2015년 업무 처리실적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

2.1.2 國內産業의 保護

通商規制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國內産業을 保護하는 역할이다. 관세부과를 통해 재산상의 부담을 주거나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그 만큼 수입이 抑制되고, 이에 따라 수입이 抑制된 품목을 생산하는 國內産業은 상대적으로 保護되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여 貿易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당시 영국에 비

하여 산업이 뒤떨어져 있던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자국의 幼稚産業이 영국의 先進産業에 짓눌려 발달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므로 國內産業이 先進國産業과 競爭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保護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것이 해밀턴(A. Hamilton)이나 리스트(F. List)의 이른바 保護貿易論이다. 이와 같은 保護貿易論은 당시 구미 각국들의 通商政策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관세에 의한 國內産業 保護가 政策手段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나라의 지나친 保護政策의 採擇이 世界交易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오히려 각국의 경제발전을 沮害하기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⁴⁾

2.1.3 國家·社會共同體의 安全保護

세계 각국은 국가와 사회 共同體의 안전을 沮害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을 철저히 制限하고 있다. 총기나 화약 등 테러용품으로 惡用될 소지가 있는 물품 등의 變則的 密搬入과 유통행위는 오늘날 어느 한 사회나 일부 국가에 局限된 문제가 아니라 全人類의 公敵인 犯罪行爲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9. 11 테러는 당사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준바 있다. 최근의 IS 테러,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 등은 모든 人類에게 恐怖와 指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2.1.4 國民保健 및 環境保護

오늘날 세계 각국의 통관과정에서 많은 規制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國民保健 및 環境保護와 관련된 것이다. 國民保健이나 環境保全에 危害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 이를 테면,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이 그 예이다. 이런 물품들의 자국 내에 搬入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면 國民保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環境

14) 장병철, 1981. *최신 관세법*, 무역경영사, p.45.

保護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중 특히, 마약문제는 우리 人類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環境피해가 비록 交易物品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과정·생산방식의 使用規制 또는 禁止措置를 취하는 경우도 環境關聯 規制의 한 분야로 포함되고 있다.

2.1.5 對外去來秩序의 維持

WTO의 출범으로 세계의 경제가 無限競爭 형태로 가속화 되자 다양한 상품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국가간 交易도 폭 넓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國籍이 불분명하거나 생산·제조국을 위장한 상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권리 없는 자가 知識財産權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가짜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에 대한 是非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때로는 이 문제가 通商紛爭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산지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상표권 등 知識財産權에 대한 확인절차를 범규화 하여 통관 시 이를 規制하고 있다. 또한 WTO의 TRIPS 협정¹⁵⁾에서는 知識財産權 保護를 위한 국경 간 措置로 상표권 침해물품이나 저작권 침해물품 등의 통관을 보류 또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거래상 어떠한 障害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自由貿易은 公正한 룰(Rule)에 기초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2.2 通商規制의 手段¹⁶⁾

通商規制 手段은 일반적으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으로 나눈다. 이

15)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특허·상표 등 8가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16) 박종하, *op. cit.*, pp.10~14.

를 앞에서 제시한 通商規制의 目的과 연관지어 검토해 보면, 關稅率 政策, 輸入規制, 原產地管理 制度, 知識財産權 保護,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 環境關聯 規制를 들 수 있다. 이 通商規制의 手段들은 通商規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通商規制의 目的 各 항목과 通商規制 手段의 關係를 연계시켜 보면, 다음 <Table 5>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5> 통상규제 목적과 통상규제 수단과의 관계

통상규제 목적	통상규제 수단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율 정책
국내산업의 보호	관세율 정책, 수입규제
국민보건 및 환경의 보호	수입규제, TBT·SPS, 환경관련 규제
국가 및 사회의 안전보호	수입규제, TBT·SPS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수입규제, 원산지관리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2.2.1 關稅率 政策

關稅障壁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財源確保는 물론, 國內産業을 保護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국물품의 무분별한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手段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通商政策 手段이다.

관세는 내국세에 비해 통관할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세인 關係로 세원포착이 용이하고 擔稅 保障力이 비교적 높다¹⁷⁾. 그러나 관세가 활용하기 쉬운 通商政策 중의 하나라고 하여 막무가내로 높은 세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17) 이명구, 김용태, 2007. 관세정책과 관세법. (주)협동문고, pp.143~145.

되면 그 나라의 市場이 국제적으로 競爭力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相對國의 무역 파트너가 다른 나라로 수출처를 옮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국가의 消費者 입장에서든 세금부담에 따른 불만의 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다자간 國際協商에서도 관세율 문제가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공통의제가 되기도 하였다.

GATT는 8차례에 걸친 다자간 貿易協商을 통해 다국적 次元에서 관세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관세의 수입 抑制的인 기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GATT(1947) 제 1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國際協商에서 관세인하 합의는 WTO체제로의 재편 이후에도 協商에 참여한 해당 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市場開放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GATT체제 하의 무역협상 내역

차수	협상명칭	협상년도	참여국수	평균관세인하율
1	Geneva	1947	23개국	35%
2	Annecy	1949	33개국	-
3	Torquay	1950	34개국	-
4	Geneva	1956	22개국	-
5	Dillon	1960~1961	45개국	-
6	Kennedy	1962 ~ 1967	48개국	35%
7	Tokyo	1973 ~ 1979	99개국	34%
8	Uruguay	1986 ~ 1993	123개국	34%

자료 : 산업연구원, 1999. 시장개방 바로알기, p.151.내용 근거로 재구성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한편, 관세는 WTO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輸入規制 형태로 여전히 각국의 通商政策에서 중요한 手段이 되고 있다. 先進國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 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開途國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관세수준이 높은 편이다. WTO의 DDA協商은 先進國 중심

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開發途上國들의 반발과 농업·공산품·서비스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나타나는 회원국들 간의 큰 입장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현재 제8차 WTO 각료회의까지 진행되는 장기간 協商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進展이 없으며 조만간에 妥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課稅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課稅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課稅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課稅의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로 분류된다. 그림으로 要約하면 다음 <Fig.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 -과세의 기회에 따라 | :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 -과세의 목적에 따라 | : 재정관세, 보호관세 |
| -과세의 방법에 따라 | :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 -과세의 성격에 따라 | :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

<Fig. 3> 관세의 종류

한편, 수출국의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國際貿易에서는 不公正貿易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 생산자의 덤핑(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덤핑행위(또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公正한 競爭關係를 확립하고 國內産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덤핑차액(또는 보조금 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하여 수입을 規制할 수 있다. 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GATT 제 6 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해당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세부과를 통해 수입을 規制하는 형태이긴 하나 일반적 關稅率 政策보다는 특정상황에 따른 輸入規制가 그 본연의 취지이므로 본 研究에서는 輸入規制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2.2.2 輸入規制

輸入規制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아예 수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수입시 허가·승인·표시·추천·증명·그 밖의 조건 등¹⁸⁾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制限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미풍양속, 環境保護 등의 목적을 지니며, 나라마다 대상품목들을 정해 놓고 이를 規制하고 있다.

WTO 협정으로 재편된 GATT 협정문 제11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 기타조세,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Quota),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規制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12조에서는 자국의 대외자금사정이나 國際收支保護를 위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制限할 수 있도록 留保條項을 두었고, 제19조에서는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 협정 제2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通商制限의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① 공중도덕을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 ②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保護하기 위해 필요한 措置

18) 이종익, 최천식, 박병목. 2016. 관세법 해설, 세경사. pp.534~538.

③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措置

④ 통관의 시행,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保護,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⑤ 교도소 노동상품과 관련된 措置

⑥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保護를 위하여 부과되는 措置

⑦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措置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制限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⑧ 체약당사자단(현 WTO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그 자체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하여야지는 措置

⑨ 정부의 안정화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국내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制限을 수반하는 措置(단, 동 制限은 이러한 國內産業의 수출 또는 이러한 國內産業에 부여되는 保護를 증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⑩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措置(단, 동 措置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 되는 동 措置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함)

輸入規制의 특수형태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는 특정 상품의 수

입이 증가하여 國內産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GATT 제1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세율이나 수량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措置할 수 있다.

2.2.3 原產地管理 制度

원산지 규정이란 國際貿易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규 또는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해당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기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는 國際交易을 制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通商障壁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FTA 등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지역경제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사용¹⁹⁾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措置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輸入規制 措置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非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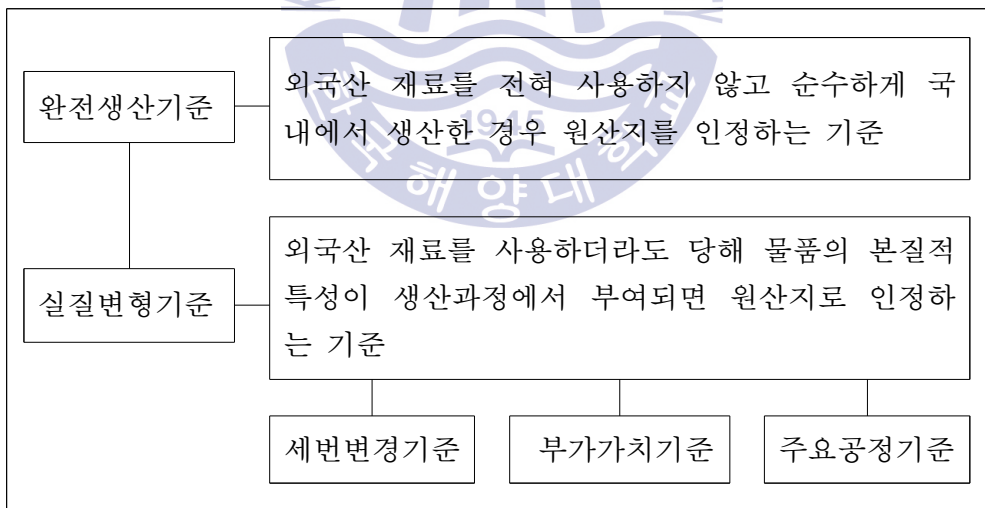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²⁰⁾(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非특혜원산지에 관한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交易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우 원

19) 성운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주)협동문고, pp.8~15.

20) 권재중 등, 1994. *WTO협정과 신교역질서*. 한국무역경영, pp.221~236.

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數量規制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이 非특혜적인 通商政策 手段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1994) 제1조 제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크게 나누어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 있으며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Fig. 4>의 내용과 같다.



<Fig. 4> 원산지 결정기준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 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WTO의 공동작업으로 1995년

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참여한 利害關係의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특허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FTA의 締結이 증가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增大되고 있다.

2.2.4 知識財産權 保護

知識財産(Intellectual Property)²¹⁾은 발명, 의장(design), 기술 및 예술적 창작활동의 결과 등으로 얻어진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國際貿易에서 知識財産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知識財産權의 保護는 지식 혁신에 대한 유인제공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交易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知識財産權 관련 제도는 交易과 성장간의 關係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 점차 確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또는 상표들이 해외에서 侵害당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先進國의 압력에 의해 知識財産權 保護를 강화해 오던 政策에서 자발적으로 국내외에서 무형자산 保護에 더욱 적극적인 政策으로 전환하여야 할 岐路에 서게 되었다.

知識財産權의 국제적 保護는 기존의 여러 國際協約에 의하여 規律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²²⁾은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을 다루고 있으며, 베른협약(Berne Convention)²³⁾은 저작권을 規律하고 있다. 知識財産權 관련 주요 國際協約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7>의 내용과 같다.

<Table 7>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

협정명	체결연도	가입국수	주요내용
-----	------	------	------

21) *ibid*, pp.361~394.

22)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보호를 위해 1883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이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련 용어집*, p.104.).

23) 일명 ‘학문 및 미술 저작물 보호 만국동맹 창설에 관한 조약’ ; 저작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 1886년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되었다(*ibid*, p.42.).

파리협약	1883	160	산업재산권 보호
베른협약	1886	147	저작권 보호
마드리드협정	1891	32	상품의 출처 허위표시방지
로마협약	1961	67	저작인접권 보호
제네바협약	1971	63	음반복제 방지
브뤼셀협약	1974	15	위성통신 신호 보호
나이로비조약	1981	40	올림픽상징물 상업적 사용통제
상표조약	1994	26	상표권의 국제화
WIPO ²⁴⁾ 저작권조약	1996	72	저작권의 배타적 전송, 방송권리
WIPO저작인접권조약	1996	68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전송, 방송권리
특허법 조약	2000	47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 및 특허비용 절감에 대한 특허법 국제조화

자료 : 최낙균 등, 2002. WTO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대외경제연구원, p.147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

또한 知識財産權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86년 UR협상 출범과 더불어 위조상품을 포함한 무역관련 知識財産權 保護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시되면서 GATT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무역관련 知識財産權(TRIPS) 협정이 타결되었다. TRIPS 협정은 위조상품의 交易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國際協約을 모두 吸收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財産權에 대해 그 保護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특히, 先進國들이 知識財産權의 세계적 강화를 통하여 자국 상품의 競爭力 維持를 도모했다.

24)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식재산기구(*ibid*, p.56.).

2.2.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

非關稅障壁의 일종으로 일컬어지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貿易 技術障壁)²⁵⁾는 국가 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WTO의 ‘무역상 技術障壁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보건 및 環境 保護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 절차가 國際貿易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의 목적으로 採擇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 원칙과 國際貿易에 불필요한 障害를 유발하는 방식의 採擇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 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環境保護,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國境措置를 취하고 있다.

技術障壁은 전통적인 貿易障壁인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技術障壁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規制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遵守自體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遵守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技術障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

25) 권재중 등, *op. cit.*, pp.117~140.

런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불투명한 절차 등이 보통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ing)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일종의 技術障壁이다. TBT 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環境保護 등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採擇되었다고 주장되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保護手段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 措置와 관련한 貿易紛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BT와 더불어 또 다른 非關稅障壁의 하나인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²⁶⁾의 경우, 과거에는 생명과 健康保護에 관련된 국내 政策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사항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이 國際貿易 規範의 規律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와 ‘생명 및 健康的 保護’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GATT 체제에 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국의 檢疫主權을 이유로 한 輸入規制措置는 GATT 제20조(b)에 의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이 마련되어 檢疫主權을 이유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에 대해 주로 SPS협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措置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SPS위원회의 SPS 제4조 상의 동등성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SPS)이 있다.

SPS 협정의 적용대상인 SPS 措置는 ‘식품에서 기인하는(food-borne)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disease) 또는 병충해(pests)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말한다. SPS 협

26) *ibid.*, pp.81~94.

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健康과 생명관련 政策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 措置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維持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5.7조의 요건과 합치하는 잠정조치 제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制限이 아닐 것과 保護의 一貫性을 維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S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SPS 措置의 예로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 措置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措置가 TBT 措置이면서 동시에 SPS 措置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SPS 협정이 적용된다. 健康과 食品安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環境汚染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로 인해 각국의 SPS 措置를 취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한편 수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SPS 措置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貿易制限措置로 인식하여 紛爭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2.2.6 環境關聯 規制

環境²⁷⁾에 관련된 規制는 큰 범주에서는 環境관련 무역조치(ERTMs : 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環境政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무역을 規制 혹은 制限하는 措置이다. 한국가가 추구하는 環境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環境政策을 시행하며, 동 環境政策의 유효성을 確保하기 위한 制裁手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자간 環境協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후자는 環境目的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環境政策을 말한다.

이와 같은 環境保全을 이유로 한 通商規制措置는 오용 혹은 남용되어

27) *ibid.*, pp.335~338.

保護貿易主義的 手段으로 惡用되어서는 안되며 각종 環境措置 또한 交易을 불필요하게 혹은 부당하게 制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요 先進國에서는 環境保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의 이익을 保護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環境基準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環境措置를 적용하는 事例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措置는 環境關聯 通商障壁을 형성하며 나아가 環境保全과 무역촉진 간에 마찰을 유발한다. 環境關聯 規制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類型이 있다.

첫째,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이다. 環境危害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規制, 制限, 禁止로 環境有害製品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은 판매의 制限과 禁止,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交易의 制限과 禁止, 오존층 파괴물질 規制措置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특정 제조공정의 使用制限 및 禁止이다. 環境被害가 交易製品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의 使用規制 또는 禁止措置를 취하여 環境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規制가 그 예에 해당된다.

셋째, 環境基準(Compulsory Norm)이다. 環境基準은 제품기준, 제조공정 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로 분류되며, 그 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環境基準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通商障壁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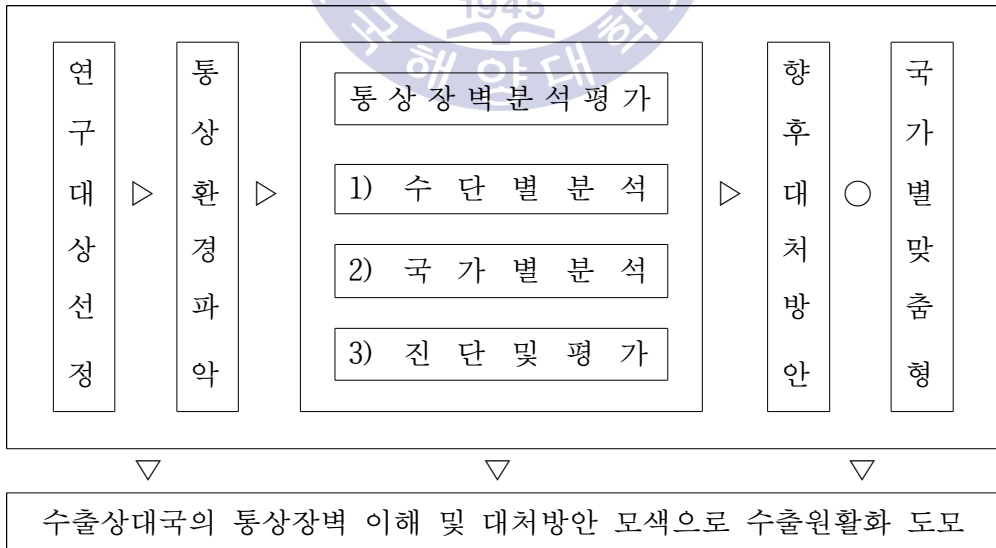
넷째, 環境마크제도(Eco-labeling Program)이다.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環境親和商品에 環境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先進國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에 대한 環境親和商品의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다자간 環境協約에 의한 措置이다. 國際環境協約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貿易措置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층 保護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등 20여개 협약이 通商規制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2.3 研究의 흐름도

본 研究의 진행방향 및 과정은 앞에서 研究對象으로 選定한 우리나라 主要 交易 成長國(4개국)에 대하여 먼저 通商環境에 대한 實態를 파악하고, 通商規制의 手段별·국가별 현상을 分析 및 評價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국가별 주요 通商障壁에 대해 맞춤형 對處方案을 제시하는 형태다. 본 연구의 흐름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Fig. 5> 내용과 같다.



<Fig. 5> 연구의 흐름도

제 3 장 韓國 主要 交易 成長國의 通商障壁

3.1 베트남

3.1.1 國家特徵

3.1.1.1 國家概要²⁸⁾

베트남(Vietnam)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는 나라다.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外勢의 侵略을 끊임없이 받아오다가 1884년에는 프랑스 植民地가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獨立을 선언하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지형적으로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또한 남북으로의 긴 해안선이 무려 3,444Km에 달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外勢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베트남은 1954년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1954년에는 북베트남의 공산당정권이 북베트남에서 프랑스 植民勢力을 완전히 패퇴시킨 후,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졌다. 남과 북분단은 동쪽사이의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르게 된 아픔의 역사가 되었다. 統一 戰爭 중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였으며 한국과 필리핀·타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支援軍을 파병하였으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킴에 따라 戰爭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공산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하다. 行政區域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 직할시(centrally administered city)와 59개의 성(省)으로 이루어져 있다.

28) 외교부, 2013, *베트남개황*, pp.11~15, 45~67.

KOTR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베트남은 豐富한 해안유전과 석탄, 석회석, 철광석, 흑연, 고령토, 석영, 금, 각종 보석 등이 매장되어 있어 자원이 豐富한 편이다. 원유 매장량은 약 11억 5,100만 루베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연탄의 매장량은 100억 톤, 철광석의 매장량은 20억 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3.1.1.2 우리나라와의 關係²⁹⁾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10월 월남공화국을 승인하고, 그 다음해 5월 사이공에 외교공관을 설치한 이래 親善友好關係를 維持했다. 그러나 베트남전³⁰⁾에 한국군이 자유(자본주의) 진영측 支援을 위한 파병을 계기로 후일 공산화를 이룬 통일 베트남과 關係가 소원해 오다가 1992년 12월 정식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실질적 協力關係를 維持해 오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은 북한과의 전통적 友好關係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과의 실질적 協力關係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양국은 1993년부터 정부의 고위급 인사의 交叉訪問을 통해 友誼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 이후 역대 대통령의 국민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3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여 상호간 經濟協力の 결속을 다진 바 있다.

실질적 經濟協力 면에서는 2001년 8월 양국은 友好協力關係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베트남 21세기 包括的 同業者 關係’를 선언하고 協力を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07년 6월 發效된 한-아세안 FTA의 일원국으로 交易量이 급속히 增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과 베트남은 한

29) 외교부(2013), *op. cit.*, pp.123~163.

30)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년12월~1954년 8월) 이후 분단되었던 베트남에서 1955년 11월~1975년 4월까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이 전쟁은 분단된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임과 동시에 냉전시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1964년 8월~1973년 3월까지 미국 등 외국 군대가 개입하고 캄보디아·라오스로 전선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치러졌다[유종선, 2012. 미국사 다이제스트(악몽의 전쟁, 수렁에 빠진 제국), 가람기획 No.87].

차원 높은 수준의 긴밀한 유대와 經濟協力을 위해 한-베트남 양자간의 FTA를 推進하여 2015년 12월에 發效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 消費 潛在力이 높은 베트남 內需市場을 공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베트남은 지하자원이 豊富하고 成長 潛在力이 많은 국가임과 동시,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相互間 交易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한 交易 相對國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¹⁾ 1992년 修交 이래 본격화된 양국 간 交易은 1990년대 연평균 19%대의 지속적인 成長勢를 보이면서 2001년 이후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新興有望市場으로 浮上해 왔다.³²⁾ 양국 간의 交易去來 형태 및 구조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천연자원이나 경공업 상품을 수입해 오고 자본재나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형태이다.³³⁾

2000년부터 20년간의 交易量 變化 推移와 최근 5년간 交易實績을 보면, 아래 <Table 8>, <Table 9>의 내용과 같다.

<Table 8> 한-베트남 교역량 변화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 체	교역액	3,327.5	5,456.5	8,915.9	9,632.6
	성장률	27.9	64.0	63.3	8.0
베트남	교역액	20.1	41.2	129.8	375.7
	성장률	29.7	105.0	215.0	189.4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31) 베트남은 2015년도 기준 수출은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제4위/ 무역흑자는 중국, 홍콩, 미국에 이어 제4위를 기록(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32) 김동규, 2010. 한국-베트남간 경제현황과 교역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6(1), pp.293~294.

33) Inshik Oh, 2006.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sues and Prospects*. 동남아시아연구 16(1), p.45.

<Table 9> 한-베트남 최근 5년간 교역실적

(단위 : 억 달러,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출	134.6(39.5)	159.5(18.4)	210.9(32.2)	223.5(6.0)	277.7(24.2)
수 입	50.8(52.6)	57.2(12.5)	71.8(25.5)	79.9(11.4)	98.0(22.7)
무역수지	83.8	102.3	139.1	143.6	179.7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최근 들어 世界經濟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모두 增加勢가 두드러져 보이고 貿易收支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도 기준 한국의 對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① 무선통신기기 ② 반도체 ③ 평판디스크 플레이 및 센서 ④ 기계부품 ⑤ 자동차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① 의류 ② 무선통신기기 ③ 신발 ④ 컴퓨터 ⑤ 목재류 등이다.

3.1.2 通商環境 實態

3.1.2.1 關稅率 政策³⁴⁾

베트남은 1998년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개정 법률에서는 世界經濟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코드체계(Harmi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현재 거래상품에 대한 品目分類는 HS 8단위 체계를 기반으로 있다.

關稅率 政策에 있어 베트남의 關稅障壁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995년도 ASEAN 가입, 2007년도 WTO 가입,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하거나 또는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締

34)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4, *2013년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pp.269~274.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5, *2014년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pp.257~267.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6, *2015년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pp.282~293.
 KOTRA(v), *op. cit.*(2016. 8. 2.접속)

結을 계기로 아래 <Table 10>의 내용과 같이 평균관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10> 베트남의 평균관세율 변화 추이

구 분	2000년	2011년	2013년
평균관세율	16.2%	11.8%	9.5%

자료 : 외교통상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의 ‘외국의 통상환경’ 해당 연도별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

관세율 추이를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平均 關稅率이 16.2%였으나, 2011년도에는 11.8%, 2013년도에는 9.5%로 낮아졌다. 그리고 2015년 12월 한국과 양자간 FTA가 發效되었고, 또한 미국 등과의 TPP³⁵⁾ 타결, 앞으로 EU, 러시아 등과의 FTA 협상 진행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베트남의 平均 關稅率은 한층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1월부터 시행하여오는 베트남의 수입관세율 體系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 일반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正常貿易關係(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2015년 12월 현재 163개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正常貿易關係(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경

35)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이다.(한국무역협회,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rade Brief 54, pp.1-8.

우(FTA적용 이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Tariffs) :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A.TIGA(아세안), AKFTA(한-아세안), ACFTA(아세안-중국), AJFTA(아세안-일본), VJEPA(베트남-일본), AANZ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 AIFTA(아세안-인도), VCFTA(베트남-칠레), VKFTA(한국-베트남) 등 9개이며, 베트남-TPP, EU, EFTA, 러시아 등과의 FTA가 협상완료 내지는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관세율 운용 측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2007년 6월 發效된 한-아세안 FTA에 이어 한-베트남 FTA가 2015년 12월 새롭게 發效됨에 따라 둘 중 유리한 쪽의 관세율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그중 특별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에서 開放되지 않은 品目を 追加로 확대해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의 自由化 水準에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을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撤廢하기로 하였다.

<Table 11> 한-베트남 FTA(2015) 對 한국 주요 품목 양허현황

주요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내 철폐
믹서기(25%)	5년내 철폐
화장품(10~25%)	10년내 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내 철폐
차량용엔진(5~25%)	3~7년내 철폐
화물차(5~20톤,30%) 및 승용차(3천cc초과,68%)일부품목	10년내 철폐
합성스테인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내 철폐
아연도강판(5%), 동중가공품(5~10%),철강제가공품(10%)	7~10년내 철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베트남 FTA 설명자료.

關稅率 政策의 또 다른 측면의 관세납부 猶豫 및 還給에 있어서는 임가공 계약을 締結하여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가 일시 免除되며, 그 대상은 임가공 계약을 締結한 위탁기업이 직접 공급한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샘플기계 장치 등이다.³⁶⁾ 납부 猶豫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수입 전 해당 세관으로부터 납부 猶豫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임가공 목적이 아닌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당연히 수입시마다 정한 관세를 納付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履行期限의 制限이 없으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과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納付한 관세를 還給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還給신청이 가능하다.

3.1.2.2 輸入規制³⁷⁾

2006년 초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상법의 시행령을 발표하고 2006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순수 베트남 자본의 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業種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 되었으나, 새로운 상법 시행령에서는 業種에 關係없이 자율적인 수출입 權限을 賦與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 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투자허가와 연관된 部門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다.

○ 수입금지 품목

36) 변동욱, 2015. *최신베트남 세법*. 문커뮤니케이션, pp.337-339.

37) 2013, *op. cit.*, pp.275-279. 2014, *op. cit.*, pp.267-272. 2015, *op. cit.*, pp.293-298. KOTRA(v), *op. cit.*,(2016. 8. 3.접속)

- 무기류, 폭발류(공업용은 제외), 군사장비
-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반동 문화품(어린이의 인격, 질서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장남감)
- 우측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핸들 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制限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중고 운반구 및 부품품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블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번호가 조작된 차량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Schedule D)

○ 수입제한 품목

베트남은 자국의 제조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기계 및 부품 등 중고품목의 輸入規制(단, 투자목적의 공장설비용의 경우는 제외) 폭을 擴大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 權限을 委任받은 기관들이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한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수량이나 금액의 制限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중고품 수출 시는 확대된 輸入制限 중고품목의 목록을 미리 細心하게 檢討해야 한다.

○ 수입쿼터(Import Quota)

2003년부터 베트남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투자부(MPI) 등 關係部處와 협의를 거쳐 선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베트남 정부의 政策은 自由貿易을 獎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특정품목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쿼터를 통해 이를 制限하거나 輸入禁止 등 措置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쿼터 대상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그 내용은 사전에 파악해 보고 미리 그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베트남의 2015년도 수입쿼터대상을 보면 아래<Table 12> 내용과 같다.

<Table 12> 베트남 2015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및 한계량

HS 코드	상 품	쿼터량
0407	각종달걀	44,100다스
1701	설탕	77,000톤
2401	담배원료	44,100톤
2501	소금	102,000톤

자료 : 베트남 무역부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뉴스³⁸⁾를 근거로 재작성

이미 정해진 수입쿼터량이 초과되었을 시에도 통관은 특별한 制限없이 가능하나 베트남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상계관세

베트남은 앞의 일반적인 關稅率 政策 외에 수입의 規制, 公正貿易去來 관리를 위해 彈力的으로 적용이 가능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

38) KOTRA(v), *op. cit.*(2016. 8. 3.접속)

덤핑관세, 상계관세 등과 같은 특별관세 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관세제도의 운용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13>의 내용과 같이 베트남은 2012년 12월 식물성 기름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조사하여 規制對象으로 확정된 뒤, 2013년 5월 7일부터 1년차 規制로 긴급관세율 5%를 시작해 2016년 5월 7일부터 4년차 規制로 긴급관세율 2%의 특별관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規制措置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다.

<Table 13> 베트남의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현황

품 목	HS Code	조사개시	판정	조치내용
식물성 기름 (Vegetable oil)	1507.90- 1511.90-	2012.12.26.	규제	2013.8.23.Safeguard규제 공고(4년간 규제시행) -1년째(13.5.7~14.5.6: 5%) -2년째(14.5.7~15.5.6: 4%) -3년째(15.5.7~16.5.6: 3%) -4년째(16.5.7~17.5.6: 2%)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4. 외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총람, p.201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

또한 베트남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 4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을 뿐이며, 이것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개국 중에서 38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반덤핑 措置도 단 4건으로 반덤핑措置를 취한 경험이 있는 45개국 중에서 34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베트남은 단 한 차례의 반덤핑 조사도 개시한 事例가 없다. 베트남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한 事例가 없다.³⁹⁾

39) KOTRA(v), *op. cit.*(2016. 8. 4. 접속)

3.1.2.3 原產地管理 制度⁴⁰⁾

베트남은 별도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수출물품에 대하여 거래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수동적인 입장에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관례화 되어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FTA가 활발히締結·시행되면서 그 취지에 맞는 특혜원산지기준을 마련하고 FTA締結 상대국과 협의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특혜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협정)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⁴¹⁾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EPT 제도는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는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2015년 12월에 發效된 한-베 FTA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은 이전(2007년 7월)에 發效된 한-ASEAN FTA와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한-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전기·전자 등의 경우 우리의 核心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하였으며,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 기준(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追加하여 업계의 便宜를 提高하였다. 또한 특혜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便宜를 圖謀하였다.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국(베트남)에서 생산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 다음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실질적 변형

40) 이영달, 2016.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pp.208~283
KOTRA(v), *op. cit.*(2016. 8. 4. 접속)

41) 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an ASEAN tariff and trade scheme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CEPT>). (2016. 8. 4. 접속).

기준으로 크게 나누고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공정기준으로 나누는 큰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1.2.4 知識財産權 保護⁴²⁾

베트남은 知識財産權 保護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未備하여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保護의 脆弱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메인 관련 事例를 들 수 있다. 2013년 7월 베트남에서 ‘산업특허권 행정위반 처리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산업특허권을 침해한 도메인 네임에 대해 행정위반처리 결정이 나면 현행 1년 猶豫에서 10일 猶豫 후 회수 가능하도록 처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도메인 소유권자의 등록 방해, 양도이익 목적의 도메인 등록,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등 知識財産權 소유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거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도메인 사용 행위에 적용된다. 또한 도메인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도메인을 회수 처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知識財産權 침해 행위를 근절키 위해 知識財産權 保護를 위한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감찰단, 산업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하 경제경찰,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知識財産權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知識財産權 保護에 대한 법률과 措置를 보완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들은 知識財産權 保護 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해 知識財産權 保護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

42) 2013, *op. cit.*, pp.282-283. 2014, *op. cit.*, pp.277-278. 2015, *op. cit.*, pp.303-304. KOTRA(v), *op. cit.*(2016. 9. 2. 접속)

의 知識財産權은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실용신안권(Utility Solution Patent), 디자인(Industrial Design), 반도체배치 설계권(IC Layout Design) 등이 있다.

○ 특허권(Patent)

베트남은 특허권을 민법상 保護하고 있는데 특허의 保護 척도는 상품, 발명 과정, 산업 적용 능력 등이며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실용 신안과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해서 발명과 기술 혁신, 공업 디자인 특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는 특허관련 國際條約은 특허협력조약(PCT), 파리조약이 있고 특허권 출원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5~6년이다. 조사와 심사는 베트남 국가지식재산권기구(NOIP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 신청 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해지된 특허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허권의 유효 기간은 발명 및 기술 혁신은 20년, 실용신안은 15년, 공업 디자인 특허는 5년(2년 연장 가능)이다. 이러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서나 다른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안물이어야 하며 국가 안위에 害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상표권(Trademark)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상 保護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保護는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하여 保護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保護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베트남 정부는 1995년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현지 생산 제품의 수출 통관 시 상표권 등록 여부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빙서류는 본래 바이어와의 상표 등록증 사본, 보증 서한이나

현지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또는 B/L상에 상표권에 대한 적법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지 관련 부처는 베트남 상무부, 세관총국, 각 시, 성 인민위원회 등이다.

상표권의 출원, 심사 절차는 지원, 심사, 공고, 이의신청(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 순이며 평균 12개월이 소요된다. 공증 받은 위임장이 요구되며 상표권이 사기성을 띠거나 대상 권리의 충돌, 창의성 묘사성과 식별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출원이 거절당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약 6개월이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사용이 없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경우 재판 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베트남은 상표권 관련 국제 조약인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인 한국의 경우 상표의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保護할 수 있다.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제도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면서 保護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의 국가별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본국관청에 상표의 국제출원을 신청하고 베트남을 지정하여 상표권을 保護받을 수 있다.

○ 저작권(Copyright)

베트남은 민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保護對象 품목을 문화,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과학적 품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 강의, 연설, 연극작품, 예술적 행위와 영화 및 방송 관련물, 음악, 예술품, 과학 작품, 교수 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괄적으로 保護하고 있다. 저작권의 保護를 받는 작품은 原作이어야 하며, 작품의 질 및 형식에 관계없이 저작권 保護를 받는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된 소유주가 의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등록 신청서에는 저작권 프로그램의 작품명, 내용, 작가명, 저작권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기록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책임 서약을 한다.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저작권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인증서를 발급 받고, 만약 발급이 거절된 경우 서류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를 한다.

3.1.2.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⁴³⁾

○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 지정 운영

베트남 정부는 2006년 3월 7일 총리령 No. 50-2006-QD-TTg을 공고하여 국내에 流通되는 자국산 및 수입품 중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을 소관 정부기관별로 지정하였다. 각 소관 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공포된 정부령 179-2004-ND-CP에 따라 품질 검사기관을 공식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총리령에 명시된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검사를 신청하며 각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流通 許可證을 발부하게 된다.

<Table 14> 베트남 품질검사 소관부처 및 대상물품 내역

소관부처	대상물품	품질검사기관
보건부	<p>○ 의료 설비 및 기구</p> <p>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관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피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p>	<p>SMQCT Center (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p>

43) 2013, *op. cit.*, pp.275~279. 2014, *op. cit.*, pp.267~272. 2015, *op. cit.*, pp.293~298. KOTRA(v), *op. cit.*(2016. 9. 8. 접속)

	<p>○ 백신 핵백신, 디프테리아 (DTP) 백신, 광견병 백신</p>	
<p>농업농촌개발부</p>	<p>○ 해양양식용 사료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p>	<p>SMQCT Center,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p>
	<p>○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 (끓이거나 열 가한 제품)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p>	
	<p>○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p>	
	<p>○ 식물보호제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p>	
	<p>○ 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 (NPK), 질소고정 미생물</p>	

	<p>비료, 섬유소(Cellulose) 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 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p>	
	<p>○ 동물용 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p>	
	<p>○ 동물사료 동물사료, 농후 사료</p>	
<p>산업무역부</p>	<p>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p>	<p>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Hanoi</p>
<p>운송부</p>	<p>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샷,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p>	<p>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p>

	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 철도 교통수단	
건설부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출라나(화산화)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SMQCT Center,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노동보훈사회부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 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 병, 전기 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SMQCT Center
과학기술부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헬멧, 열연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 절연 전선, 순간 전	SMQCT Center

	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용구,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 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 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휘발유, 디젤 연료, 3세 이하 장난감	
자동수입허가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8)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함

자료 : 베트남 통상부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뉴스⁴⁴⁾를 근거로 재작성

○ 라벨링(Labeling)

베트남 내에서 流通되는 대부분의 수입 재화는 국가가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遵守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權利保護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44) KOTRA(v), *op. cit.*(2016. 9. 6. 접속)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내용에 추가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 옆 수입업체 라벨을 별도로 부착
- 표기내용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상품명,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중량, 부피, 지름),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制限, 인간과 環境의 안전),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사용법, 보존방법, 제품의 원산지

○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 (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先進國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 화장품: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 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 서류

3.1.2.6 環境關聯 規制⁴⁵⁾

45) 2013, *op. cit.*, pp.299~301. 2014, *op. cit.*, pp.273~275. 2015, *op. cit.*, pp.299~301.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베트남 環境保護法이 發效되었다. 이 법은 2005년 環境保護法을 일부 수정 및 개정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구법과 동일하며,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의 투자 시 일정부분을 환경보호비로 납부토록 하는 규정 강화, 베트남의 環境保護 마스터플랜 추가, 재활용 폐기물 輸入規制 강화 등이다.

環境保護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環境基準을 遵守해야 하며, 環境基準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와 중고기계 및 장비(環境安全基準, 생산년도 制限), 폐기대상 운반구 및 輸入禁止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禁止된다. 또한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禁止되며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環境保護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採擇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에서 제정한 新 베트남 환경보호법 14~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①전략적 환경영향평가(국가적, 지방성,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관련 전략, 계획에 영향) ②환경영향평가(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 초래 가능 프로젝트) ③환경보호 약속 이행서(환경영향평가 미대상 프로젝트)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관련 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반드시 예비조사 및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 의정서(29/2011/NDCP)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20만 톤 이상) 등과 같은 지역 및 業種에 대해서는 環境影響評價를 받아야 한다.

KOTRA(v), *op. cit.*(2016. 9. 9. 접속)

베트남 정부는 環境保護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되는 環境規定은 주로 유럽 쪽의 높은 기준을 採擇하는 경우가 많다. 環境保護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環境許可 효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내에서 環境保護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으로 環境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는 趨勢이다.

3.2 인도

3.2.1 國家特徵

3.2.1.1 國家概要⁴⁶⁾

인도(India)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이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로 아시아의 남부에 위치하며 기원전 2500년 무렵 인더스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1857년 무굴제국이 멸망한 뒤, 영국의 殖民地로 편입되었다가 1947년 8월 15일 獨立하였다. 인도는 서쪽으로 파키스탄, 북동쪽으로 중국·네팔·부탄, 동쪽으로 방글라데시·미얀마와 국경을 접한다. 1915년 맥마혼(McMahon)⁴⁷⁾ 선언에 따라 영국령인 인도와 중국의 국경이 히말라야 산맥 분수령에 설정된 이후, 중국과 國境紛爭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1962년에는 戰爭까지 치른 바 있다. 파키스탄과는 獨立 당시부터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領土紛爭을 벌여왔다.

국토면적은 세계 7위이며,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행정구역

46) 외교부, 2015, *인도개황*, pp.12~26, 78~108.

KOTR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41>

47)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관무관 A.H.맥마혼과 샤리프 후세인 간의 서한(書翰)을 발표한 것으로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 선언(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은 28개주(state)와 7개 연합주(union territory)로 되어있다. 최근들어 BRICs 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온 인도는 생산·소비능력이 왕성한 청년층 인구가 많아 市場潛在力이 매우 큰 나라로 好評받고 있다.⁴⁸⁾

3.2.1.2 우리나라와의 關係⁴⁹⁾

인도는 우리나라와 1973년 12월 정식 外交關係를 수립한 뒤, 경제적으로 꾸준히 關係가 밀접해 졌다. 외교적으로 인도는 독립 당시부터 패권주의 반대, 군사동맹 가입 반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모든 국가와의 友好關係 수립 등 非同盟 中立政策을 기본노선으로 표방하면서 한국이나 북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 신장, 국제적인 지위 상승을 높이 評價해서 한국과의 關係 增進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는 무역협정·문화협정(1974. 8.), 과학기술협력협정(1976. 3.), 이종과세방지협정(1985. 7.), 항공협정(1992. 3.), 관광협정(1993. 9.), 투자보장협정(1996. 5.) 등을 締結한 바 있고, 2010년 1월에 發效된 한-인도 CEPA를 통해 경제적 동반자로 그 關係를 더욱 견고히 굳히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交易은 꾸준히 늘어나는 趨勢에 있다. 양국 交易은 2002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급격한 增加를 보였으며, 특히 한-인도 CEPA 發效 이후 양국간 交易規模가 크게 增加하였는 바, CEPA 협정(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發效 첫 해인 2010년 양국간 交易額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171억 달러,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20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CEPA 효과가 가시화되다가 그 이후 世界經濟 둔화의 영향으로 양국 交易規模가 다소 減少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의 對 인도 貿易 收支는 75억 달러로 한-인도 무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인도는 철강

48) 송승이, 2013. 인도시장 진출 10계명.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2(5), p.1.

49) 외교부(2015), *op. cit.*, pp.186~209. KOTRA(i), *op. cit.*(2016. 9. 10. 접속)

· 시멘트 등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 내의 중간재 생산 침체와 공업화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도의 석유개발 장비·전자부품·제강시설·선박 등 고도기술 산업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한국의 對 인도 交易量 변화추이를 보면 아래 <Table 15>, <Table 16>의 내용과 같다.

<Table 15> 한-인도 교역량 변화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 체	교역액	3,327.5	5,456.5	8,915.9	9,632.6
	성장률	27.9	64.0	63.3	8.0
인 도	교역액	23.1	67.1	171.0	162.7
	성장률	19.7	190.5	154.8	-4.9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Table 16> 한-인도 최근 5년간 교역실적

(단위: 억 달러,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출	126.5(10.7)	119.2(-5.8)	113.7(-4.6)	127.8(12.4)	120.3(-5.9)
수 입	78.9(39.1)	69.2(-12.3)	61.8(-10.7)	52.7(-14.7)	42.4(-19.6)
무역수지	47.6	50.0	51.9	75.0	77.9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1995년부터 2015년 기간(20년간) 중 交易量은 2015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출은 감소세와 증가세가 반복되고 있으나 수입은 꾸준히 줄어 들어 貿易收支는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기준 한국의 對 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① 무선통신기기 ② 철강판 ③ 자동차부품 ④ 합성수지 ⑤ 석유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① 석유제품 ② 알루미늄 ③ 식물성물질 ④ 정밀화학원료 ⑤ 합금철 선철 및 고철류 등이다.

3.2.2 通商環境 實態

3.2.2.1 關稅率 政策⁵⁰⁾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開放的이고 市場指向的인 貿易政策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保護하는 주요한 政策 手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2014 회계연도(12월까지) 중앙정부의 세수 중 12.68%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은 2004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國內産業 保護를 위한 적정한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5년 19.2%(농산물 37.6%, 비농산물 16.4%)에서 2007년 14.5%(농산물 34.4%, 비농산물 11.5%), 2009년 12.9%(농산물 31.8%, 비농산물 10.1%)로 낮아졌다.

○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賦課하고 있는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ducational 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총관세율은 상당히 높아진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에 기본관세는 10%이지만, 교육세 3%, 부가관세 12%, 특별부가관세 4%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28.85%에 달한다. 다만,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소비세율(Excise Duty)을

50) 2013, *op. cit.*, pp.341~343. 2014, *op. cit.*, pp.308~309. 2015, *op. cit.*, pp.336~338. KOTRA(i), *op. cit.*(2016. 9. 10. 접속)

2008년 12월 10%로, 2009년 2월 추가로 8%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 10%로 재(再)인상하고 2012년 12%로 다시 재인상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7년 6월 인도의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 부과가 총관세율을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어 WTO 의무 위반이라며 인도를 WTO 紛爭解決機構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부가관세는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에 대해서만, 특별부가관세는 공산품/농산품의 예를 인용하였다. 2008년 2월 DSP는 부가관세가 동종 국내생산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보정하는 WTO 합치제도라는 인도측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8년 8월 DSP 결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⁵¹⁾에 항소한 바, WTO 상소기구는 2008년 10월 DSP 결정을 뒤집고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판결에서 내국세를 보상하기 위한 수입부담금이라도 그 부담 정도가 동종제품의 내국세 부담을 넘어선다면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趣旨의 판결을 하였다.

○ 주요 관세 특혜 제도

- 특별 경제 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면세제도 ; 가장 대표적인 관세 특혜 제도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 요건(외화 수취액 > 외화 지출액)을 갖추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免除해 주고 있다.

- 수출촉진용 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감면제도 ;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 감면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51)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하는 기구(*ibid*, p.49).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 제도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制限的으로 운용된다. DFIA 제도를 적용 받을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免除된다. 이 경우 관세 免除 조건은 해당 제품의 정상 관세액의 8배를 8년 내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일정부분 이상 수출할 경우 그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免除 받을 수 있다.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 Unit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기업에 대하여, DEPB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猶豫해 주는 제도이다.

○ FTA 등 특혜관세

인도는 각종 특혜무역 협정 締結을 통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와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정상 관세보다 낮은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변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국가 연합(SAARC) 국가들과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관세 免除 또는 減免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 인도는 태국과 FTA 협상을 妥結하고 2004년 11월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조기 인하 措置(Early Harvest)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 8월부터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CECA)을 전면적으로 發效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 외에 다른 FTA 締結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 계획에 따라 관세를 免除 또는 引下해서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는 자유무역(FTA)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연구 그룹이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과는 CEP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를 締結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發效되었다. 말레이시아와는 2011년 7월 1

일부 CECA가, 일본과는 2011년 8월 1일부터 CEP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가 發效되었다. 협정이 發效된 후, 품목의 따라 기본관세가 감축 스케줄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引下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특혜관세 협정은 한-인도 CEPA의 양자협정이 있고, 우리나라와 인도가 같은 회원국으로 가입한 GSTP 협정, APTA 협정 등이 있는 바, 그 내용을 협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인도 CEPA : 2010년 1월 發效된 동 협정으로 한국-인도간 상품 품목과 수입액 기준 85%의 제품이 향후 8년 이내에 철폐 또는 감축되게 되는 게 목표이다.

GSTP⁵²⁾ : 동 협정은 77그룹⁵³⁾ 국가 내 48개국이 31개 품목에 대해 상호 10~50% 관세 특혜를 제공하며, 1989년 4월 19일부터 發效되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회원국으로 상호 특혜 관세를 제공하고 있다.

APTA⁵⁴⁾ : 동 협정은 아시아·태평양협정 회원국 간 56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5년 7월 협정이 締結되어 1976년부터 發效되었으며 일명 방콕협정이라고도 한다.

3.2.2.2 輸入規制⁵⁵⁾

인도의 품목별 輸入規制는 국가 시책상 수입이 禁止되는 수입금지품목

52)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1980년대 중반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상호간의 특혜관세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발한 국제무역특혜제도로 UNCTAD 후원하에 협상이 이루어짐. 권능조항에 의해 WTO 체제 내에서 체결이 가능함(ibid, p.17.).

53) 77그룹: 국제연합(UN) 내 개발도상국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임(시사상식사전, 박문각).

54)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1976년 방콕협정으로 출범한 아태지역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으로 아태지역 6개국인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가 가맹국이다. 2007년 10월부터 무역 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과 관세양허 확대를 목표로 4라운드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사).

55) 2013, *op. cit.*, pp.343~345. 2014, *op. cit.*, pp.310~312. 2015, *op. cit.*, pp.339~340. KOTRA(i), *op. cit.*(2016. 9. 11. 접속).

(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輸入制限品目(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輸入規制品目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나누어 보면 아래 <Table 17>과 같고, 輸入禁止⁵⁶⁾, 制限物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8>, <Table 19>와 같다.

<Table 17>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구 분	적용품목	비 고
수입금지품목	동물의 고기, 유지 등	수입불가
수입전매품목	대두, 요소(비료), 밀, 메슬린, 팜스테아린 등	인도식품공사 등 특정기관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
수입제한품목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통신기기, 타이어(중고타이어 포함), 중고 기계 등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입 허가 등 제한적으로 가능한 품목

자료 :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 시장뉴스⁵⁷⁾를 근거로 재작성

<Table 18>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총 60개 품목)

연번	HS코드	품 목
1	02074300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2	02089010	Other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of wild animals
3	02091000	Of pigs
4	02099000	Others
5	03057100	Shark fins
6	04100010	Edibel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f Wild animals
7	05040031	Guts of other animals for natural food casings of wild animals

56) 관세청, 2016. 인도 관세법(한·인도 대역본), p.12

57) KOTRA(), *op. cit.*(2016. 9. 11. 접속).

8	05040041	Guts other than for natural food castings of wild animals
9	05040051	Bladders & stomachs of Wild animals
10	05051010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of wild birds
11	05059021	Other feather (excluding for stuffing purpose): of wild birds
12	05059031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of wild birds
13	05059091	Skins and other parts : Of wild birds
14	05061011	Bones, including horn-cores, crushed: Of wild animals
15	05061021	Bone grist :Of wild animals
16	05061031	Ossein :Of wild animals
17	05061041	Bones, horn cones & parts thereof, not crushed :Of wild animals
18	05069011	Bone meal Of wild animals
19	05069091	Other :Of wild animals
20	05071010	Ivory
21	05071020	Ivory powder and waste
22	05100091	Ambergris, castoreum, civet and musk; cantharides; bile, whether or not dried; glands of wild animals
23	05119110	Fish nails
24	05119120	Fish tails
25	05119130	Other fish waste
26	05119921	Sinews and tendons Of wild life
27	05119992	Bovine embryo - Of wild life
28	15011010	Lard
29	15012000	Other pig fat
30	15019000	Others
31	15021010	Mutton Tallow
32	15021090	Other
33	15029010	Inrendered fats
34	15029020	Rendered fats or solvent extraction facts
35	15029090	Others
36	15020030	Rendered or solvent extraction fats

37	15020090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38	15030000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39	15041099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40	15042030	Sperm Oil
41	15042090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42	150430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43	15060010	Neats Foot Oil and fats from bone or waste
44	15060090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45	15161000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46	15171010	Margarine of Animal Origin
47	15179030	Imitation lard of animal origin
48	1518004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1516; 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9	15220010	Degras
50	15220020	Soap Stocks
51	15220090	Other
52	35071011	Microbial rennet: Animal rennet
53	35071019	Other enzymes; prepared enzym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54	35071091	Animal rennet
55	35071099	Other animal rennet
56	43021940	Tiger-Cat skins
57	4303101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1972

58	43039010	other articles of fur skin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 1972
59	8517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60	9601100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자료 :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 시장뉴스⁵⁸⁾를 근거로 재작성

<Table 19> 인도의 수입전매 품목 리스트(총 22개 품목)

연번	HS코드	품 목	비 고
1	10011090	Durum Wheat, Other	Import allowed through FCI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2	10019020	Wheat(not seed) for human consumption	
3	10061090	Rice in husk(paddy or rough) other	
4	10062000	Husked(Brown) Rice	
5	10063010	Rice, parboiled	
6	10063020	Basmati Rice	
7	10063090	Other semi 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8	10064000	Broken Rice	
9	12030000	Copra	
10	15131100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Crude oil	
11	15131900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Other	
12	27101111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Toluol) with nominal boiling	

58) KOTRA(), *op. cit.*(2016. 9. 12. 접속)

		point range 55-115° C	Policy, except for the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rights for marketing of transportation fuels in terms of Ministry of P&NG' s Resolution No. P-23015 /1/2001-MKT. Dated 8.3.2002 including HPCL, BPCL &IBP who have been marketing transportation fuels before the date.
13	27101112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Benzol, Toluene and Toluol) with nominal boiling point range 63-70° C	
14	27101113	Other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Benzol, Toluene and Toluol)	
15	27101119	Other motor spirit	
16	27101120	Natural gasoline liquid (NGL)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17	27101190	Other natural gasoline liquid	
18	27101910	Superior Oil(SKO)	Import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and condition No.2 at import licencing note.
19	27101920	Aviation turbine fuel(ATF)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except for the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rights for marketing of transportation fuels in terms of Ministry of P&NG' s Resolution No. P-23015/ 1/2001-MKT. Dated 8.3.2002 including HPCL, BPCL &IBP who have been marketing transportation fuels before this date.
20	27101930	High Speed Diesel(HSD)	
21	27101940	Light Diesel Oil(LDO)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22	31021000	Urea,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Import allowed through STC, MMTC and India

			Potash Limited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	--	--	--

자료 :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 시장뉴스⁵⁹⁾를 근거로 재작성

○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인도 정부는 중고 차량 수입 시, 중고 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 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뭍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 차량은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도 거쳐야 하며 이는 수출 및 선적전에 완료해야 한다. 테스트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the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Ahmednagar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Pune or Central Farm Machinery Training and Testing Institute(트랙터) 등이 속한다.

이 외 배기량 제한도 있는데, 수입하는 중고 자동차 배기량은 3,000cc를 넘어야 하며 1000cc-2500cc의 중고 차량은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cc-500cc 사이의 모델은 수입 가능하며,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의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나 800cc를 넘길 수 없다.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2001년 기존의 수입 數量規制를 전면 撤廢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制限을 가하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數量制限에 관한 한 여타국과 달리 수입에 있어 특별한 制限 措置는 없다고 보면 된다.

59) KOTRA(i), *op. cit.*(2016. 9. 10. 접속)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는 2015년 현재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며, 2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수출물품 중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은 구연산나트륨, 포화지방알콜, 무용접강판, 디옥틸프탈레이트이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과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이다.⁶⁰⁾

○ 반덤핑 및 상계관세⁶¹⁾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保護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貿易收支 赤字를 緩和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輸入規制措置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관세를 賦課한 나라이다. 무려 총 740건의 조사를 개시해 534건에 대하여 반덤핑措置를 취함으로써 2위 미국의 527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345건에 대해 반덤핑措置를 취한 것에 비추어 그 격차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했었다. 인도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6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39건에 대해 반덤핑 措置를 취하였다. 인도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18건에 대해

60) 산업통상부, 외교부, 2016. 2015년 外國의 통상환경(2권 분야별 통상환경) pp.112-134.

61) *ibid.*, pp.120-122.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8건의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상품은 아크릴단섬유,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고무, 가성소다-3,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2, 나일론필라멘트사, 탄산칼륨, 아세톤-2, 석유화학 첨가제(Rubber Chemicals), 인산, 600~1250mm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PVC 수지(PVC paste Resin), 프탈산무수물(Phthalic Anhydride), 폭 600mm 이하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메틸렌클로라이드, 질산나트륨, Cast Aluminium Alloy Wheels, 고순도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상품은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Cast Aluminium Alloy Wheels, 질산나트륨, USB flash drives, 고순도테레프탈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쓰리즈, 페놀, 2-에틸헥산올(2-Ethyl Hexanol), 카본블랙(Carbon Black)이다. 인도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상계관세를 賦課하고 있는 事例가 없다.

3.2.2.3 原產地管理 制度⁶²⁾

인도는 별도의 일반(비특혜)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發效된 한-인도 CEPA 협정은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실질적 변형기준 대상의 경우, 세번변경(일반적으로 6단위 변경)과 역내부가가치(일반적으로 35%)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62) 2013, *op. cit.*, p.343. 2014, *op. cit.*, p.310. 2015, *op. cit.*, p.338. KOTRA(i), *op. cit.*(2016. 9. 10. 접속).

도입되었으며, 기타 미소기준⁶³⁾ 도입 등으로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緩和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또한 역의 가공지로 개성공단이 인정되어 108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 원산지 조달비중이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협정상 원산지 기준은 5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며, 비회원국산 투입물(원재료, 부품 등)의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 간 누적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인정하되, 이 경우 회원국산 투입물의 합산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개발 회원국(방글라데시, 수단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위 항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각각 10%의 별도혜택을 賦與하고 있다.

그리고 APTA(아세아-태평양무역협정) 상 원산지기준은 45%(방글라데시·라오스 35%)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출품의 생산 비용 및 노동 비용이 해당 제품 공장도 가격(ex-works)의 50% 이상이다.

3.2.2.4 知識財産權 保護⁶⁴⁾

인도는 WTO 무역관련 知識財産權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知識財産權을 保護하고 있다. 특허법(The Patent Act, 1970/2005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2002 개정),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知識財産權

63) 미소기준 :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국제원산지정보원, 2012.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p.7.

64) 2013, *op. cit.*, pp.348-349. 2014, *op. cit.*, p.316. 2015, *op. cit.*, pp.344-345. KOTRA(i), *op. cit.*(2016. 9. 13. 접속).

保護를 위한 법률·행정·사법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知識財産權 침해율이 매우 높고 保護 메커니즘이 허술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先進國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2006년 대비 피해액이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 특허권(Patent)

인도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 2005년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保護한다. 특허권의 유형으로는 일반특허권(ordinary patents), 우선특허권(priority patents), 부가특허권(patents of addition)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일반특허권의 경우 등록 후 20년까지, 부가특허권의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특허권의 유효기간에 귀속된다. 2005년 특허권법 개정 이후 제조 및 제품 특허권은 화학제품, 음식, 약물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개발,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건강, 環境에 被害를 입힐 수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허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등록은 뭄바이에 위치한 특허청이나 뉴델리, 콜카타, 첸나이에 위치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상표권(Trademark)

기존의 상표법을 대체하는 1999년에 제정된 ‘New Trademarks Act’는 2002년에 개정되었으며 保護 對象으로는 브랜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새 상표법을 통해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에 공히 적용되며, 상품의 모양, 포장 방법, 색상 조합 등도 상표의 범주로 간주된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특유성을 가져야 하며, 법에 위배되거나 기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 등록된 상표의 최초 사용자가 상

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 받으며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나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의 유효 기간이 더 부여된다. 상표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아마다바드에 위치한 상표 등록국(Trade Marks Registry) 또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에 위치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권 변리사가 상표 소유권자를 대신해 상표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 저작권(Copyrights)

知識財産權의 발달로 저작권과 관련된 S/W의 불법 복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인도의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어 최근 2012년도에 개정되었으며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이 保護 對象이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 루피(약 90만 1,500원, 2014년 12월 기준 1루피=18.03원)에서 20만 루피(약 360만 6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작권법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우 저자 사후(死後) 60년까지이며 그 밖에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혹은 출시) 이후 60년까지다. 저작권의 등록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저작권청(Copyright Office in New Delhi Registration)에서 신청할 수 있다.

3.2.2.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⁶⁵⁾

○ BIS 필수 인증대상 품목지정 운영

인도의 품질인증 및 공업 표준 제도로는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제도가 있다. 인도 정부는 분유, 용기식수, 일부 전기설비, 일부 철강제, 타이어 등 9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인도품질규격(Indian Quality

65) 2013, *op. cit.*, pp.345~346. 2014, *op. cit.*, pp.312~313. 2015, *op. cit.*, p.341. KOTRA(i), *op. cit.*,(2016. 9. 13. 접속).

Standard)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외국 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인도표준청으로부터 제조설비를 검사·승인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制限하는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規制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 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指摘 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 는 위생 및 검역, 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 생관련 규정이 자국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抑制하는 手段으로 惡用되고 있다는 指摘이 있다. 이러한 인도의 까다롭고 주관적 기준의 위생·검역 措置(輸入規制)는 결국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져 WTO 紛爭解決機構에 제소된 事例도 있다.⁶⁶⁾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 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인 도정부의 품질인증기관인 STQC(Standardisation Testing and Quality Certification)는 인도 기업의 국제규격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STQC는 ISO-9001 QMS, IEC(Smark), IEC, ISMS, ITSM 등의 인증 서비스와 함께 VDE(독일), LCIE(프랑스), KEMA(네덜란드), KTL(한국), JQA(일본) 등과 제 휴 아래 전국 15개소에 실험실을 두고 품질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Table 20> 인도 BIS 필수인증 대상 품목

No.	IS NO.	Product
Cement		
1	IS 12269	Ordinary Portland Cement, 53 Grade

66) 이성형, 전정기, 박종하, 2016.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7호, pp..35~53.

2	IS 12330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3	IS 12600	Low heat Portland Cement
4	IS 1489(Part1)	Portland Pozzolana Cement-Part1 Fly-ash based
5	IS 1489(Part2)	Portland Pozzolana Cement-Part 2 Calcined clay based
6	IS 269	Ordinary Portland Cement, 33 Grade
7	IS 3466	Masonry Cement
8	IS 455	Portland Slag Cement
9	IS 6452	High Alumina Cement for Structural use
10	IS 6909	Super sulphated cement
11	IS 8041	Rapid hardening portland cement
12	IS 8042	White Portland Cement
13	IS 8043	HydroPhobic Portland Cement
14	IS 8112	Ordinary Portland Cement, 43 Grade
15	IS 8229	Oil well Cement
Household Electrical goods		
16	IS 12640(Part1)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Part 1 Circuit breakers with intergral overcurrent protection(RCCBs)
17	IS 12640(Par2)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Part 2 Circuit breakers with intergral overcurrent protection(RCVOs)
18	IS 13010	AC watt-hour meters, class 0.5, 1&2
19	IS 13779	AC static watt-hour meters, class 1&2
20	IS 14697	AC static transformer operated watt-hour and VAR-hour meters, class 0.2S &0.5S
21	IS 15111(Part1&2)	Self Ballast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 Part 1: Safety Requirements &Part2 : Performance Requirement
22	IS 303(Part2/Sec3)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iron
23	IS 302(Part2/Sec201)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Electric immersion water-heaters
24	IS 302(Part2/Sec202)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Electric stoves
25	IS 302(Part2/Sec30)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Room heater
26	IS 3854	Swiches for domestic and similar purposes
27	IS 418	Tungsten Filament general service electric lamps(upto 100W)

28	IS 694	PVC insulated cables for working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1100V
29	IS 8144	Multi-purpose by batteries
30	IS 8828	Electrical Accessories Circuit breakers for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installations
31	IS 9968(Part1)	Elastomer insulated cable (Part1): For working voltage up to and including 1100V
Food & related products		
32	IS 15757	Follow-up Formula- complimentary foods
33	IS 11536	Processed 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34	IS 1165	Milk-powder
35	IS 1166	Condensed milk, partly skimmed and skimmed condensed milk
36	IS 12176	Sweetened ultra high temperature treated condensed milk
37	IS 13334(Part1)	Skimmed milk-powder, standard grade
38	IS 13334(Part2)	Skimmed milk-powder, extra grade
39	IS 13428	Packaged Natural Mineral Water
40	IS 14433	Infant milk substitutes
41	IS 14542	Partly skimmed milk powder
42	IS 14543	Packaged Drinking Water (Other than Packaged Natural Mineral Water)
43	IS 1656	Milk-cereal based weaning foods
44	IS 3470	Hexane, Food grade
45	IS 14625	Plastic Feeding Bottles
46	IS 5168	Glass Feeding Bottles
Oil Pressure Stoves		
47	IS 10109	Oil pressure, offset burner type
48	IS 2787	Multi-burner oil pressure stoves
49	IS 1342	Oil pressure stoves
Automobiles Accessories		
50	IS 13098	Automotive vehicles-Tubes for pneumatic tyres
51	IS 15627	Automotive vehicles-Pneumatic tyres for two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52	IS 15633	Automotive vehicles-Pneumatic tyres for passenger car vehicles-Diagonal and radial ply
53	IS 15636	Automotive vehicles-Pneumatic tyres for commercial vehicles-Diagonal and radial ply

Cylinders, Valves and Regulators		
54	IS 14899	Liquefied petroleum gas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55	IS 15100	Multifunction valve assembly for permanently fixed liquefied petroleum gas(LPG)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56	IS 3196(Part4)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art4 Cylinders for toxic and corrosive gases
57	IS 3196(Part1)	Welded low carbon steel gas cylinder exceeding 5-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art1 cylind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LPG)
58	IS 3196(Part2)	Welded low carbon steel gas cylinder exceeding 5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art 2 cylinder for liquefiable gases other than LPG
59	IS 3224	Valve fittings for compressed gas cylinder excluding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
60	IS 3745	Yoke type Valve connection for Small Medical Gas Cylinders
61	IS 7142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not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62	IS 7285(Part1)	Refillable seamless steel gas cylinders Part1 Normalized steel cylinders
63	IS 7285(Part2)	Refillable Seamless steel gas cylinder Part 2 Quenched and tempered steel cylinders with tensile strength less than 1100 MPa(112kgf/mm ²)
64	IS 7302	Valve fittings for gas cylinder valves for use with breathing apparatus
65	IS 7312	Welded and seamless steel dissolved acetylene gas cylinder
66	IS 8737	Valve fitting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 of more than 5 litre water capacity Part 2 Valve fittings for newly manufactured LPG cylinders
67	IS 8776	Valve Fitting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LPG) Cylinders up to and Including 5-Litre Water Capacity
68	IS 9798	Low Pressure regulator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LPG) mixtures
Medical Equipment		

69	IS 3055(Part1)	Clinical thermometers : Part1 Solid stem type
70	IS 3055(Part2)	Clinical thermometers : Part2 Enclosed scale type
71	IS 7620(Part1)	Diagnostic Medical X-Ray Equipment
Steel Products		
72	IS 1785(Part1)	Plain Hard-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Part1 Cold Drawn Stress-relieved Wire
73	IS 1785(Part2)	Plain hard-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Part2: As drawn wire
74	IS 1161	Steel tubes for structural purposes
75	IS 1239(Part1)	Steel Tubes, Tubulars and Other Wrought Steel Fittings-Part1: Steel Tubes
76	IS 13620	Fusion bonded epoxy coated reinforcing bars
77	IS 14268	Uncoated Stress Relieved Low Relaxation Seven-ply Strand for Pre-stressed Concrete
78	IS 15391	Cold Rolled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 and Strip-Semi-Processed Type (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79	IS 1786	High strength deformed steel bars and wires for concrete reinforcement.(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80	IS 2002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for intermediate and high temperature service including boilers. (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81	IS 2041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used at moderate and low temperature. (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82	IS 2062	Hot rolled medium and high tensile structural steel (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83	IS 277	Galvanized steel sheets (Plain and corrugated)
84	IS 2830	Carbon steel cast billet ingots, billets, blooms and slabs for rerolling into steel for general structural purpose (for details of sizes, please see Steel Quality Control Order)
85	IS 4270	Steel tubes used for water-wells(upto 200mm dia)
86	IS 6003	Indented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87	IS 6006	Uncoated stress relieved strand for Pre-stressed concrete

88	IS 648	Cold rolled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s and strip-fully processed type(CRNO) (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89	IS 8329	Centrifugally cast (spun) ductile iron pressure pipes for water, gas and sewage
90	IS 9523	Ductile iron fittings for pressure pipes for water, gas and sewage
91	IS 3024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 & strip (CRGO) (For details of sizes, please refer to Steel Quality Control order at www.steel.gov.in)
Electrical Transformers		
92	IS 1180 (Part1)	Out door type Oil immersed Distribution Transformers upto and including 2500kVA, 33KV-specification Part1 Mineral oil immersed
93	IS 432 : Part1	Mild Steel and Medium Tensile Steel Bars and Hard-Drawn Steel Wire for Concrete Reinforcement: Part 1 Mild steel and medium tensile steel bars
94	IS 432 : Part2	Mild steel and Medium Tensile steel bars and Hard-Drawn Steel Wire for Concrete Reinforcement: Part 2 Hard- Drawn Steel Wire
95	IS 513	Cold reduced low carbon steel sheets and strips
96	IS 1079	Hot 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97	IS 1875	Carbon steel billets, blooms, slabs and bars for forgings
98	IS 2879	Mild steel for metal arc welding electrodes
99	IS 3502	Steel Chequered Plates
100	IS 5872	Cold Rolled Steel Strips (Box Strappings)
101	IS 5986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for Structural Forming and Flanging Purposes
102	IS 6240	Hot Rolled Steel Plate (up to 6 mm) Sheet and Strip for the Manufacture of Low Pressure Liquefiable Gas Cylinders
103	IS 7283	Hot Rolled bars for production of bright bars and machined part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104	IS 7887	Mild steel wire rods for general engineering purposes
105	IS 10748	Hot Rolled Steel Strip for Welded Tubes and Pipes
106	IS 11513	Hot Rolled Carbon Steel Strip For Cold Rolling Purposes
107	IS 15647	Hot rolled steel narrow width strip for welded tubes and pipes

List of Electronics and IT Goods under ‘Compulsory Registration		
1	IS 616:2010	Electronic Games (Video)
2	IS 13252:2010	Laptop/Notebook/Tablets
3	IS 616:2010	Plasma/ LCD/LED Televisions of screen size 32" &above
4	IS 616:2010	Optical Disc Players with built in amplifiers of input power 200W and above
5	IS 302-2-25:1994	Microwave Ovens
6	IS 13252:2010	Visual Display Units, Video Monitors of screen size 32" &above
7	IS 13252:2010	Printers, Plotters
8	IS 13252:2010	Scanners
9	IS 13252:2010	Wireless Keyboards
10	IS 13252:2010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11	IS 616:2010	Amplifiers with input power 2000W and above
12	IS 616:2010	Electronic Musical Systems with input power 200W and above
13	IS 302-2-26:1994	Electronic Clocks with Mains Powers
14	IS 13252:2010	Set Top Box
15	IS 13252:2010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16	IS 13252(Part1):2010	Power Adaptors for IT Equipments
17	IS 616:2010	Power Adaptors for Audio, Video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18	IS 16242(Part1):2014	UPS/Invertors of rating ≤ 5 kVA
19	IS 15885(Part 2/Sec13):2012	DC or AC Supplied Electronic Control gear for LED Modules
20	IS 16046:2012	Sealed Secondary Cells/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21	IS 16102(Part1):2012	Self-Ballasted L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22	10322(Part 5/Sec1):2012	Fixed General Purpose LED Luminaries
23	IS 13252(Part1):2010	Mobile Phones
24	IS 13252(Part1):2010	Cash Registers
25	IS 13252(Part1):2010	Point of Sale Terminals
26	IS 13252(Part1):2010	Copying Macjomes/Duplicators
27	IS 13252(Part1):2010	Smart Card Readers

28	IS 13252(Part1):2010	Mail Processing, Machines/Postage, Machines/ Franking Machines
29	IS 13252(Part1):2010	Passport Reader
30	IS 13252(Part1):2010	Power Banks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자료 : 인도 Bureau of Indian Standards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뉴스⁶⁷⁾를 근거로 재작성

○ 중고물품 안전인증

안전을 이유로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國內産業 保護를 위한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規制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이 없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幼稚産業 段階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保護를 위한 措置라 보여 진다.

3.2.2.6 環境關聯 規制⁶⁸⁾

인도는 헌법으로 環境保護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直接規制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環境規制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하여 수질법(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環境 法規를 통한 環境關聯 規制裝置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 을 수

67) KOTRA(i), *op. cit.*(2016. 9. 15. 접속).

68) 2013, *op. cit.*, pp.346~347. 2014, *op. cit.*, pp.313~314. 2015, *op. cit.*, pp.342~343.

KOTRA(i), *op. cit.*(2016. 9. 15. 접속).

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環境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n Climate Change)” 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 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나, 개별 政策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擴大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環境關聯 規制 중에서 특히 사전 環境承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環境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環境承認(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環境汚染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環境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3.3 멕시코

3.3.1 國家特徵

3.3.1.1 國家概要⁶⁹⁾

멕시코(Mexico)는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있는 나라이다. 마야, 톨테크, 아스텍의 인디오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1521년부터 스페인(에스파니아)의 植民支配를 받아오다가 1821년 코르도바조약에 의해 獨立되었다. 정식명칭은 멕시코 합중국(United Mexican States)이다. 중부아메리카 최대의 연방공화국으로 국명은 아스텍족의 군신(軍神)인 멕시틀리(Mexictli)에서 유래한다. 북쪽은 미국, 남쪽은 과테말라·벨리즈와 접하고,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멕시코만(灣)에 접해있다. 북서 태평양 연안에는 본토와 병행해서 1,200km 길이로 돌출한 캘리포니아 반도(半島)가 있고 남동 대서양 연안에는 북쪽을 향해 유카탄 반도가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가른다. 1846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북부지역 일부를 잃었고 1910~1917년 혁명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졌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미국의 긴급 지원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대미 依存度가 높다. 행정구역은 31개 주(estado)와 1개 연방구(distrito federal)로 이루어져 있다. 멕시코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저렴한 인건비,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즈니스 環境이 개선되고 있어 생산·수출기지로서 魅力的인 나라다.⁷⁰⁾

3.3.1.2 우리나라와의 關係⁷¹⁾

멕시코 정부는 일찍이 1948년 12월 12일 우리나라를 승인하였고, 6.25전쟁 중에는 유엔의 긴급구호계획에 의거하여 약 35만 달러 상당의 곡물 및 약품을 원조한 바 있다. 양국은 1962년 1월 정식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69) 외교부, 2016, 멕시코개황, pp.3~10, 49~71.

KOTR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8>

70) 유승진, 2016. *멕시코 경제동향 및 우리기업의 기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6년 제11호, p.11-22.

71) 외교부(2016-맥), *op. cit.*, pp.119~150. KOTRA(m), *op. cit.*(2016. 9. 15. 접속).

우리나라는 1962년 7월 멕시코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고, 멕시코 정부도 1978년 3월 우리나라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양국은 1966년 4월 문화 협정을締結한 이래, 1966년 12월에 무역 협정, 1979년 3월에 일반사증면제 협정, 1988년 7월에는 항공 협정, 1989년 11월에는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1991년 9월에는 과학협력 협정, 관광협력 협정, 경제사회개발기획협력 협정을締結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정, 1996년 11월에는 범죄인인도 협정을締結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형사사법공조조약, 세관상호지원 협정, 광물자원협정 약정,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약정, 정부혁신분야협력 약정, DMB협력 약정 등을 일괄締結한 바 있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文化交流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KTA 등을 통해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Table 21> 한-멕시코 교역량 변화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 체	교역액	3,327.5	5,456.5	8,915.9	9,632.6
	성장률	27.9	64.0	63.3	8.0
멕시코	교역액	27.7	42.5	103.7	143.5
	성장률	121.6	53.4	144.0	38.4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Table 22> 한-멕시코 최근 5년간 교역실적

(단위: 억 달러,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출	97.3(10.0)	90.4(-7.1)	97.3(7.6)	108.5(11.5)	108.9(0.4)
수 입	23.2(52.3)	25.9(11.9)	23.0(-11.2)	32.7(42.1)	34.6(68.3)
무역수지	74.1	64.5	74.3	75.8	74.3

자료 : 관세청 연도별 · 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1995년부터 2015년 기간(20년간) 중 交易量은 꾸준히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도 기준 한국의 對 멕시코 주요 수출품목은 ①평판디스플레이 ②자동차부품 ③칼라TV ④선박 ⑤승용차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①원유 ②기타금속광물 ③나프타 ④자동차부품 ⑤아연광 등이다.

3.3.2 通商環境 實態

3.3.2.1 關稅率 政策⁷²⁾

멕시코는 1988년부터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 내의 分類基準을 따른다. 商品分類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개의 FRACCION으로 細分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0% :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킬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72) 2013, *op. cit.*, pp.93-96. 2014, *op. cit.*, pp.97-100. 2015, *op. cit.*, pp.107-111. KOTRA(m), *op. cit.*(2016. 9. 15. 접속).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3)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4) 15-20%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5) 23-3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MFN 단순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 의회는 2008년 6월 멕시코에서 賦課하는 對 중국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引下하기로 한 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撤廢를 猶豫해 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수출품중 상위 10위를 점하는 품목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措置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된 2012년 이후 한국제품의 對멕시코 수출경쟁력이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引下방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關稅引下 방안

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關稅引下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에 이에 해당된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引下 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 →14.2%로 引下된다

<Table 23> 멕시코의 관세조정(2011. 11.)된 주요 제품

적용관세	주요 제품 (HS Code)
0%	면도기 손잡이(3924.90), 광전지 포함 광선 과민 반도체 제품(8541.40.01), 태양광전지(8541.40), 광전지 조립 모듈 및 패널(8541.40), 노리 김(1212.21),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2916.14), 톨루엔 디이소 시아네이트(2929.10), 6-에톡시-1, 2-디하이드로-2, 2.4-트리메틸 퀴놀린(에톡시퀴)(2933.49), 폴리비닐 피롤리딘(3905.99), 석면 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 시멘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기타 항목(6811.89), 면도기 및 면도날 기타(8212.89), 안전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포함)(8912.20), 완구류(9503.00)
5%	호밀(1002.10), 과중용 보리(1003.10), 과중용 귀리(1004.10), 옥수수(1005.90), 쇠미(1006.40), 메밀 및 기타 곡물(1008), 동물 사료(2309.9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2905.31), 금속 표면을 위한 조제품을 스트리핑시키는 것:납땀하거나 용접되는 땀접을 위한 용제와 분:금속과 타 제품으로 구성(3810.10), 고무 가황 촉진제(3812.10), 비중이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3901.10), 비중이 0.94 이상인 폴리에틸렌(3901.2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3901.30), 폴리에틸렌, 염화되거나 클로로 설펜화 부하 또는 변형자, 또는 안료가 미 포함된 무수말레산 에틸렌공중합체(3901.90)
6%	발연황산(2807.00), 산화아연(2817.00), 염화칼슘(2827.20), 나

	<p>트립황산(2833.11), 코드 2833.25.02의 항목을 제외한 황산동(2833),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2836.30), 탄산칼슘(2836.50), 무기 수산화합물(2852.90), 아크릴산과 그 염(2916.11), 디페닐메탄-4.4-다이소 시안산염(2929.10), 폴리에틸렌 왁스(3404.90), 디페닐메탄 다이소 시안산염과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아이소 시아네이트의 혼합물(3824.90), 석유, 역청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거나 70% 미만 함유한 바이오디젤 및 혼합물(3826.00), 그을음 없는 폴리프로필렌(3902.10), 그을음 없는 프로필렌 혼성중합체(3902.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3903.30),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의 클로로메틸레이티드 공중합체(3903.90), 비 가소성 염화비닐 중합체(3904.21), 비 가소성 염화비닐 수지(3904.22), 에톡실린, 시클로알리파틱 또는 노볼락 에폭시 수지(3907.30), 아디프산과 글리콜의 파생된 폴리에스테르 수지(3907.99), 헥사메틸렌디아민과 도데칸디오익산 폴리머(3908.10), 전자공학용 실리콘계 수지(3910.00), 동량이거나 45%를 초과한 아크릴 로니트릴을 함유한 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4002.59)</p>
10%	<p>가정용 공구(8419.19), 합성유기 유연제(3202.10.01), 비누를 제외한 유기적 설폰화 생성물, 개선된 탄산염, 칼륨 또는 나트륨의 혼합물(클리너, 습윤제 또는 유화제) 또는 조제품 수산화물 또는 인산염 제품(3402.20), 염기성 접착제(3506.91), 소매용에 적합한 유압 제동액(3819.00), 스티렌 중합체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3915.20)</p>
20%	<p>제 56.02 또는 56.03호로 분류되는 직물제 의류(6210.10),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발 등을 덮는 신발(6403.91),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끈이 있는 신발(6403.99), 아기 기저귀 및 유사 제품(9619.00), 포도</p>

	(0806.10), 메밀 및 조(1008.10), 파종용 메밀 및 조(1008.21), 밀(1001.11)>
--	--

자료 : 멕시코 통상부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뉴스⁷³⁾를 근거로 재작성

○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년 1월부터 發效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 (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 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1994년 1월 發效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동 輸入制限을 廢止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FTA 非締結國 産에 대해 20~30%대의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 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 무관세수입 허용제도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 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을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73) KOTRA(m), *op. cit.*,(2016. 9. 16. 접속)

레온(Nuevo Leon), 와하카(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코(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낄따나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制限을 두고 있다.

멕시코는 保稅加工 貿易인 마킬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킬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關稅猶豫 혜택을 보장하는 마킬라도라 제도는 멕시코 자국 기업과의 차별적 비교에 직면한 한국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⁷⁴⁾

○ 특혜관세제도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締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5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締結하였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締結한 바 있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일 FTA를 締結,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에 가입하여 2015년 10월 실질적으로 妥結되었다. 협정이 發效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양자간 FTA 締結을 위한 협상준비(여건조성)단계에 있다.

74) Chong-Suk Park, 2012. *A Study on the Trade Situations and Improvements between Korea and Mexico*. 무역연구, 8(4), p.155.

3.3.2.2 輸入規制⁷⁵⁾

멕시코는 대외통상법 제21~25조에 의거해 수입금지, 사전허가, 수출입쿼터 등에 대한 다양한 規制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規制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 절차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멕시코 경제부에서 지정한 輸入禁止 품목은 포식어류, 마약, 유해물질, 반사회 활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전사지 등이다. 이들 품목을 除外한 물품의 경우 무역업자로만 등록이 되면 대체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석유 함유 제품, 무기류, 폭발물, 군사차량, 중고타이어, 해외공관직원 차량, 중고컴퓨터, 방탄차량, 견인차 등은 사전 輸入許可를 받은 제품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멕시코의 輸入禁止 대상품목과 輸入許可 품목은 <Table 24> 및 <Table 25>에 나타나 있다.

<Table 24> 멕시코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HS Code	적용품목 내역
0301.99.01	0301 - 활어 0301.99 - 기타 0301.99.01 - 포식 어류
1208.90.03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 1208.90 - 기타 1208.90.03 - 양귀비
1209.99.07	1209 - 과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99 - 기타 1209.99.07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 기타 종자용과 혼합 불문
1211.90.02	1211 -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와 유사한 용도에 준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 여부를 불문 1211.90 - 기타

75) 2013, *op. cit.*, pp.83~98. 2014, *op. cit.*, pp.103~105. 2015, *op. cit.*, pp.112~115. KOTRA(m), *op. cit.*(2016. 9. 16. 접속).

	1211.90.02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
1302.11.02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픽텐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11 - 아편 1302.11.02 - 피울 수 있게 준비된 아편
1302.19.02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픽텐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19 - 기타 1302.19.02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
1302.39.04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픽텐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39 기타 1302.39.04 -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의 부산물
2833.29.03	2833 - 황산염, 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29 - 기타 2833.29.03 - 황산 탈륨
2903.59.03	2903 -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2903.59 - 기타 2903.59.03 1,2,3,4,10,10-헥사클로로-1,4,4a,5,8,8a,헥사하이드로-엔도, 1,4:5,8- dimethanonaphtalene(이소드린)
2903.52.02	2903 -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2903.52 - 엘더린(ISO), 클로르텐(ISO) 및 헵타클로르(ISO) 2903.52.02 - 1,2,4,5,6,7,8,8-Octachloro-3-alpha,4,7,7-알파 tetrahydro-4,7 - methanoindene(클로르텐)
2910.90.01	2910 - 원고리의 에폭시드, 에폭시알콜,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젠화 유도체, 술폰화 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90 - 기타 2910.90.01 - 1,2,3,4,10,10-헥사클로로,6,7-에폭시 -1,4,4a,5,6,7,8,8a 옥타하이드로-endo, endo - 1,4:5,8 디메타노 나프탈린(엔드린)
2931.00.05	2931. 기타 유기, 무기화합물 2931.00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00.05 - O-(2,5 디클로로 4-브로모페닐) O-methyl

	phenylthiophosphonate(렙토포스)
2939.11.01	2939 -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2939.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에토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모르핀, 니코모르핀,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풀코딘, 데바콘과 테바인 및 그들의 염 2939.11.01 -Diacetylmorphin(헤로인), 베이스 또는 히드로클로라이드
3003.40.01	3003 - 의약품 3003.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40.01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3.40.02	3003 - 의약품 3003.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3.40.02 아세틸 모르핀 또는 그 염 또는 유도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3.90.05	3003 - 의약품 3003.90 - 기타 3003.90.05 -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40.01	3004.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40.01 - 아세틸 모르핀 또는 그 염 또는 유도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40.02	3004.40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호르몬, 제 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3004.40.02 -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90.33	3004.90 - 기타 3004.90.33 - 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4103.20.02	4103 - 기타의 원피 4103.20 - 파충류의 것 4103.20.02 거북이 또는 Caguama 거북이의 것

4908.90.05	4908 - 전사지 (디칼커매니어) 4908.90 - 기타 4908.90.05 - 반사회적, 폭력적인 전사지
4911.91.05	4911 -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91 - 서화, 디자인 및 사진 4911.91.05 - 반사회적, 폭력적인 내용이 프린트 된 인쇄물

자료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작성 자료⁷⁶⁾를 근거로 제작성

<Table 25> 멕시코의 수입허가 대상 품목

품목(분야)	수입요건 내용
석유함유 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의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 의견서도 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 차량	국방부(SEDNA) 공식의견서 필요
중고 의류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ón) 공식의견서 필요
재생 중고타이어	재생 담당 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서 필요
자동차 반제품 일시 수입 시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 멕시코에서 완성 후 다시 수출 할 경우, 동반 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 필요
해외공관 직원 차량	외무부의 증빙서류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임시수입허 가증 사본제출
장애자용 차량	최근 6개월 이내 공식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건강증명 서(장애 상세 내용 포함)
방탄 차량	방탄관련 멕시코 품질협회(NORMEX) 증명서 필요
견인차	제조업회의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ón)에서 발행된 동 제품의 국내생산이 없 다는 증명서 필요
치즈 및 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 제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필요
중고컴퓨터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용으로 수입할 경우, 교육부 의 허가서 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 첫 해는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입 두 번째 해부터 수입내역에 대한 세관서류를 사전 제

76) KOTRA(m), *op. cit.*(2016. 9. 18. 접속).

자료 : 멕시코경제부(SE)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 뉴스⁷⁷⁾를 근거로 제작성

○ 중고차 수입 規制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禁止되고 있으며,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制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시코 국경지대 및 일부州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例外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締結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締結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無關稅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開放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制限하고 있는 것은 環境保護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保護次元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수입쿼터제 실시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해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당(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制限하는 措置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Arancel

77) KOTRA(m), *op. cit.*(2016. 9. 17. 접속)

Cupo) 제도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가 發效되고 있다. 이중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무역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國內産業 被害와 貿易赤字 擴大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4개국 35품목 44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건, 미국 7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4건, 한국 2건, 인도 2건, 그 외 칠레,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영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가 각 1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년 6월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종료되었다. 1993년 8월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措置를 연장해오고

있다. 한편, 2012년 10월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도금 코팅을 하지 않은 너비 600mm 이상, 두께 3mm 미만의 한국산 냉연강관(미소둔 강포)이며, 제소기준으로 멕시코 냉연강관 수입량은 2011년 881,879톤이며 이 중 한국산이 425,181톤을 차지하고 있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관과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0%가 넘는 덤핑 예비관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 간 妥協을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았다.

3.3.2.3 原產地管理 制度⁷⁸⁾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被害를 입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賦課措置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 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事例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措置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III)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동 措置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WTO의 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말부터 ‘통관 및 무역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 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동 措置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措置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78) 2013, *op. cit.*, pp.94-95. 2014, *op. cit.*, pp.103~104. 2015, *op. cit.*, p.114. KOTRA(m), *op. cit.*,(2016. 9. 17. 접속).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FTA와 다를 바 없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바탕되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3.3.2.4 知識財産權 保護⁷⁹⁾

멕시코의 知識財産權 保護제도는 주변국인 미국의 압력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등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1991년 산업재산권법(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發效된 후 2015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1994년 지식재산권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과거의 관련법에 비해 특허권 부여대상 확대 및 여타 保護措置의 강화 등을 통해 知識財産權 保護環境이 한층 개선됐다. 멕시코는 세계 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 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保護받을 수 있다. 멕시코의 知識財産權은 크게 특허(Patentes), 산업디자인(Diseños Industriales), 실용신안(Modelos de Utilidad), 상표(Marcas), 원산지표시(Denominación de Origen), 산업기밀(Secretos Industriales) 등의 산업재산권(Propiedad Industrial)과 저작권(Derecho de Autor)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의 경우 1996년 發效된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별도로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部門은 시장에 流通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특허권(Patent)

79) 2013, *op. cit.*, p.101. 2014, *op. cit.*, p.110. 2015, *op. cit.*, pp.120~121.
KOTRA(m), *op. cit.*,(2016. 9. 18. 접속)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다. 멕시코는 특허청(IMPI)에서 특허관련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이후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간 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인정되면 출원일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독점권의 保護를 받으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공익으로 환원된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신청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료는 7,553.97페소, 특허권 관보 공고료는 1,185.35페소, 특허증 발급료는 3,099.84페소이다. 16% IVA(스페인어로 ‘부가세’ 의미)는 별도로 내야 한다.

○ 상표권(Trademark)

멕시코에서 상표등록은 상표명(Nominativa), 로고(Innominada), 상표명과 로고 결합 (Mixta) 혹은 입체상표(Tridimensional) 등 4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만료기간 이후 6개월 내에 재등록 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되므로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발음 및 문자가 매우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의 확인은 특허청 사무실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다음은 상표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고, 특허청은 최고 6개월 내에 상표를 등록한 후 수락내용을 광고에 게재한다.

○ 저작권(Copyrights)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저작권 중 인격권(Derecho Moral)으로 이는 저작자만이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일신전속적인 영구적인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불가하고 만료기간/시효가 없으며 취소불능하고 압류가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둘째로, 저작권 중 다른 하나인 재산권(Derecho Patrimonial)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경제적인 권리이며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교육부(SEP)산하의 저작권관리청(Instituto Nacion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담당하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保護와 증진, 창작물의 증진, 저작권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Derecho de Autor)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3.3.2.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⁸⁰⁾

멕시코는 자국민 消費者의 保護를 위해 표준규격제도(NOM : Normas Oficiales Mexicana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인해 環境,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安全을 害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추어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充足하는 제품만을 流通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이 밖에도 라벨링, 위생 등록증 발급제도 등 通商障壁이 있다.

80) 2013, *op. cit.*, pp.97~101. 2014, *op. cit.*, pp.106~108. 2015, *op. cit.*, pp.116~119. KOTRA(m), *op. cit.*,(2016. 9. 19. 접속).

○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는 1992년부터 자국내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輸入規制의 手段이 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 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NOM 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事例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2009년 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締結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 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on Nacional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동 상호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 검사대상품목과 사후 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充足與否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달러의 수입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提出書類에 瑕疵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년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비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罰金賦課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締結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權利移讓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招來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⁸¹⁾ 1994.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멕시코 NOM 인증마크는 인증 발급기관(ANCE, NYCE)등의 기관 마크와 함께 표시된다.

81) 2015, *op. cit.*, p.118. KOTRA(m), *op. cit.*(2016. 9. 20. 접속).



<Fig. 6> 멕시코 NOM 인증마크 문형

○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不公正去來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措置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1998년 10월부터 發效되었다.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체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수입과 不公正去來, 언더벨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規制하고 있다.

○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년 9월부터 186개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해 단위 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6개 에너지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 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매장에서 관련제품의 판매가 制限된다.

○ 위생등록증 (Registro Sanitario)

멕시코 보건법 제376조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소모품 포함)은 멕시코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생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규정하는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멕시코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만 한다. 즉, 현지 수입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현지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위생등록증은 수입(수입품일 경우) 또는 판매(국내생산품일 경우)하기 전 발급받게 되어 있으며, 등록 후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가능하다. 특정 의료기기 위생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위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별도 요청되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등록증 발행 기관인 COFEPRIS(위생보호연방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위생 등록증 발급을 위한 소요기간 및 비용은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1) Clase1 : 인체 접촉이 없는 의료기기
- 2) Clase2 : 인체 접촉이 있고, 그 인체 접촉기간 30일 미만인 의료기기
- 3) Clase3 : 인체 접촉이 있고, 그 인체 접촉기간 30일 이상인 의료기기

3.3.2.6 環境關聯 規制⁸²⁾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環境保護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마킬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環境保護 基準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82) 2013, *op. cit.*, p.100. 2014, *op. cit.*, p.109. 2015, *op. cit.*, pp.119~120
KOTRA(m), *op. cit.*,(2016. 9. 21. 접속).

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멕시코 에너지 규제위원회(CRE)는 2015년 9,250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풍력 1,125MW, 바이오 에너지 88MW, 지열65MW, 태양열 3,833MW 등으로 추가 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에너지 개혁법에 따르면 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멕시코 내 월마트, Femsa, Cemex 등의 기업은 풍력업체들과 전력공급계약을締結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중 하나인 Soriana는 2014년 한국의 한화로부터 태양열 판넬을 구입, 660개 업체에 설치해 31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었다.⁸³⁾

3.4 사우디아라비아

3.4.1 國家特徵

3.4.1.1 國家概要⁸⁴⁾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간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를 접하고 있는 絶對君主制 국가이다. 1922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으로부터 처음 獨立하였고 1932년 지금의 이름으로 統合되었다.

정식명칭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사우디란 '사우드가(家)의', '사우드왕조(王朝)의' 라는 뜻이다. 북쪽으로 요르단·이라크, 동쪽으로 페르시아만(灣) 연안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남쪽으로 오만, 예멘에 접하고, 서쪽으로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 수단, 에리트레아와 마주한다. 이슬람교의 발상지이자, 최대 성지

83)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5. 외국의통상환경(2권 분야별통상환경) pp.449~450

84) 외교부, 2015, *사우디아라비아개황*, pp.3~11, 31~35.

KOTR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86>

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다. 1994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뒤부터는 쿠웨이트와의 합병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GCC⁸⁵⁾공동체의 일원으로 행정구역은 13개주(mintaqah)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유 最大 生産 國으로 2013년 기준 일일 생산량이 1,153만 배럴을 기록한 바 있다.⁸⁶⁾

3.4.1.2 우리나라와의 關係⁸⁷⁾

우리나라와는 1962년 10월 대사급 外交關係 樹立에 합의하여 1973년 7월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상주대사관은 1975년 4월에 개설되었다. 양국은 1974년 1월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 1975년 7월 문화 협정, 1984년 1월 항공 협정, 1984년 10월 항공개발 차관 협정, 1990년 2월 항공운수·소득면제 협정, 1997년 4월 교육교류 약정, 2002년 4월 투자보장 협정 등을 締結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 진출은 1973년 12월 삼환기업주식회사가 카이바와 알울라(Alula)간 고속도로공사를 수주(공사금액 미화2,400만 달러)하면서 시작되었다. 1974~197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액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1978년에는 64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중 수주액이 급증세를 나타낸 것은 1974년의 제1차 석유파동 시 유가의 폭등으로 석유판매에 따른 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재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욕적인 開發政策을 推進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외화, 이른바 오일달러(oil dollar)의 유입을 통하여 낙후된 경제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

85)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면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명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라고도 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GCC 6개국 국가현황과 산업동향*. pp.5~10.).

86) 외교부(2015), *op. cit.*, p.36.

87) 외교부(2015), *op. cit.*, pp.53~66. KOTRA(s), *op. cit.*,(2016. 9. 21. 접속).

이나 인력, 사회기초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던 것이다. 1979~19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석유판매 수입이 다시 급증하자 한국의 건설수주액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래 최대의 수주규모인 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70~1980년대 전반에 걸쳐 한국 해외건설의 최대 시장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評價된다. 우선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한국의 경제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해외건설수주를 통한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國際收支 改善은 물론 外換 危機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유입된 외화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고용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더하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건설업체들은 견적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감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술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기업의 국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연합(UN), 비동맹회의(NAM)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주요 友邦國 중 하나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最大 原油供給國이며,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수주 1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⁸⁸⁾

<Table 26>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량 변화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 체	교역액	3,327.5	5,456.5	8,915.9	9,632.6
	성장률	27.9	64.0	63.3	8.0
사우디아라비아	교역액	109.0	182.0	313.8	290.4
	성장률	66.7	67.0	72.4	-7.5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88) 임정성, 2015, *사우디에 대한 7가지 오해와 기업진출시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소, p.2.

<Table 27> 한-사우디아라비아 최근 5년간 교역실적

(단위: 억 달러,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출	69.6(52.8)	91.2(31.0)	88.3(-3.1)	82.9(-6.1)	94.8(14.4)
수 입	369.7(37.9)	397.1(7.4)	376.7(-5.1)	367.2(-2.5)	195.6(-46.7)
무역수지	-300.1	-305.9	-288.4	-284.3	-100.8

자료 : 관세청 연도별·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

1995년부터 2015년 기간(20년간) 중 交易量은 전체기간으로 보아서는 큰 폭 상승세를 잇고 있으나 2015년 만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년도(5년간) 들어서도 전반적 상승세 분위기이나 일부년도는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貿易收支면에서는 研究對象國(4개국) 중 유일하게 만년 貿易赤字 交易國이나 수입물품의 대부분⁸⁹⁾이 상품생산의 원동력이고 수출물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 및 나프타 등이며,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貿易赤字는 갈수록 改善이 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한국의 對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①수송기계(자동차 등) ②전기기기 ③철강제품 ④산업기계(건설중장비, 하역기계 등) ⑤석유화학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①광물성연료(원유, 나프타 등) ②석유화학제품 ③비철금속 ④정밀화학제품(암모니아수, 안료 등) ⑤요업제품(판유리) 등이다.

3.4.2 通商環境 實態

3.4.2.1 關稅率 政策⁹⁰⁾

89)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195.6억 달러) 중 원유 및 나프타 등 광물성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94.4%(184.7억 달러)로 절대적 수치를 이루고 있음.

90) 2013, *op. cit.*, pp.138~141. 2014, *op. cit.*, pp.158~160. 2015, *op. cit.*, pp.170~172. KOTRA(s), *op. cit.*(2016. 9. 24. 접속).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幼稚産業 保護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에는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開發途上國 平均 關稅率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제조상품과 競爭關係에 있는 시멘트, 계란, 운할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幼稚産業 保護品目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幼稚産業 保護를 위한 품목은 12%로 策定된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免除된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負擔金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未來戰略으로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⁹¹⁾ 200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6-25% 수준이었던 식음료제품, 건축자재 및 일부 소비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8년 4월 1일부터 3년간 0-5%로 引下한다고 발표했다. 또

91) 송현미, 2016.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19), pp.1-15.

한 2009년 6월 동 품목을 포함 총 8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追加 引下 또는 免除했으며, 2010년 12월 화학제품, 향수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제품 등 총 122개 품목의 관세도 7.6%-25%에서 5.5%-6%로 인하했다. 이러한 措置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당국은 2011년 4월에 수입관세 검토 후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關稅率 變更 또는 引上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Table 28>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시적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인하내역(%)	종전 : 6~25 현행 : 0~5	종전 : 15~25 현행 : 5	종전 : 7~20 현행 : 5
대상품목	냉동소고기, 냉동양고기, 가금류, 유제품, 냉동감자, 밀, 밀가루, 식물성식용유, 소시지, 파스타, 땅콩버터, 과실주스, 생수 등	유기계면활성제 (비누제외), 합성세제, 화장지, 플라스틱유아 수유병, 기저귀 등	석고, 산소, 페인트 및 바니쉬, 플라스틱관· 파이프·호스 및 연결기구, 전기스위치, 자동차단기, 조립식 건축물

자료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KOTRA 해외시장뉴스⁹²⁾를 근거로 재작성

○ 계절관세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수확기에는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輸入關稅를 免除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농산물에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92) KOTRA(s), *op. cit.*(2016. 9. 24. 접속).

<Table 29>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기준) 관세율
애호박	6월- 7월	2개월	25%(0%)
아욱	6월- 8월	3개월	25%(0%)
감자(파종용 제외)	1월- 5월	5개월	25%(0%)
토마토	5월- 8월	4개월	25%(0%)
식용 양파(파종용 제외)	6월-10월	5개월	25%(0%)
당근, 순무	2월- 5월	4개월	25%(0%)
오이(피클용 오이 포함)	5월- 8월	4개월	25%(0%)
수박	5월- 8월	4개월	25%(0%)
머스크 멜론	5월- 8월	4개월	25%(0%)

자료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 시장뉴스⁹³⁾를 근거로 재작성

○ FTA의 추진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공동체의 일원으로 FTA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과 FTA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最終妥結 되어 發效중인 FTA는 GCC-싱가포르 FTA, GCC-레바논 FTA 등 2개 FTA이다. EU, EFTA,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일본, 우리나라 등 과도 계속 協商 중에 있다.

3.4.2.2 輸入規制⁹⁴⁾

사우디아라비아는 脆弱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생필품, 소비재 등 완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종교, 안보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수입품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非할랄 제품, 주류 및 관련 제품(알코올

93) KOTRA(s), *op. cit.*(2016. 9. 25. 접속)

94) 2013, *op. cit.*, p.142. 2014, *op. cit.*, p.162. 2015, *op. cit.*, pp.174~175.

KOTRA(s), *op. cit.*(2016. 9. 27. 접속).

함유 물품, 와인 잔류물 등)과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비롯,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非의료용 약품,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광고를 사용한 제품이나 성인잡지 등 등 H.S Code 8단위 기준 약 92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禁止하고 있다. 또 모조품이나 위조 상품들의 수입은 불가하며 적발 시 罰金이 賦課된다.

<Table 30>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금지 품목

품목번호	H.S Code	적 요
103	01 03 10 00	순종의 사육동물
103	01 03 91 00	50kg 미만
103	01 03 92 00	50kg 이거나 그 이상
203	02 03 11 00	지육, 이분체
203	02 03 12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03	02 03 19 00	기타
203	02 03 21 00	지육, 이분체
203	02 03 22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03	02 03 29 00	Other 945
205	02 05 00 90	기타
206	02 06 30 00	돼지고기 (생, 냉동)
206	02 06 41 00	간
206	02 06 49 00	기타
208	02 08 90 91	개구리 다리
210	02 10 11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10	02 10 12 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10	02 10 19 00	기타
502	05 02 10 00	돼지 등의 강모
908	09 08 21 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908	09 08 22 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207	12 07 91 00	양귀비씨
1207	12 07 99 10	양귀비

1207	12 07 99 20	대마씨
1211	12 11 30 00	코카인잎
1211	12 11 40 00	양귀비짚
1211	12 11 90 20	검정 양귀비
1211	12 11 90 60	대마
1302	13 02 11 00	아편
1302	13 02 19 10	대마초
1501	15 01 10 00	라드
1503	15 03 00 11	Styrene Of pig
1503	15 03 00 21	Margarine Of pig
1503	15 03 00 91	Fat Of pig
1602	16 02 41 00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602	16 02 42 00	어깨 및 그 절단육
1602	16 02 49 00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602	16 02 90 30	동물의 피의 조제품
1704	17 04 90 80	술을 포함한 화이트 초콜릿
1806	18 06 31 10	술을 포함한 초콜릿
1806	18 06 32 10	술을 포함한 Non-Stuffed 초콜릿
2203	22 03 00 00	맥아로 만들어진 맥주
2204	22 04 10 00	스파클링 와인
2204	22 04 21 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	22 04 29 00	기타
2204	22 04 30 00	그 밖의 포도즙
2205	22 05 10 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5	22 05 90 00	기타
2206	22 06 00 00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7	22 07 20 90	기타 도수가 변성된 에틸 알코올
2208	22 08 20 00	포도 와인이나 찌꺼기를 증류해 만들어진 증류주
2208	22 08 30 00	위스키
2208	22 08 40 00	럼주 그리고 발효된 Sugar-cane 제품을 증류해 만들어진 기타 주정

2208	22 08 50 00	진과 제네바
2208	22 08 60 00	보드카
2208	22 08 70 00	리큐르류 및 코디얼
2208	22 08 90 90	기타 변성된 80%이하의 에틸 알코올
2307	23 07 00 10	포도주 찌꺼기
2524	25 24 10 00	청석면
2524	25 24 90 00	기타
2829	28 29 90 21	브롬산 칼륨
2939	29 39 91 10	코카인
3604	36 04 10 10	아동용 제품
4012	40 12 11 00	전동차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에 사용된 종류의 제품
4012	40 12 12 00	버스 또는 4륜 짐마차에 사용된 종류의 것
4012	40 12 13 00	버스 항공기에 사용된 종류의 것
4012	40 12 19 00	기타
4012	40 12 20 00	중고 공기타이어
4103	41 03 30 00	돼지
4106	41 06 31 00	습윤상태 (웨트블루를 포함)
4106	41 06 32 00	건조상태
4113	41 13 20 00	돼지
4901	49 01 99 11	코란
6309	63 09 00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6811	68 11 40 00	석면을 함유한 것
6812	68 12 80 00	청석면
6812	68 12 93 00	압축가공한 시트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 섬유 조인팅
6813	68 13 20 00	석면을 함유한 것
9013	90 13 20 10	펜이나 열쇠고리 또는 기타의 모양을 한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

자료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 뉴스⁹⁵⁾를 근거로 재작성

95) KOTRA(s), *op. cit.*(2016. 9. 27. 접속).

○ 중고차량 및 일부전기제품 수입금지

2009년 6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環境保護,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禁止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禁止된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는 學生保護次元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使用을 禁止시켰다. 이어 2011년 6월에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내 제조를 2012년 5월부터 禁止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方針에 따른 것이다.

○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산지가 이스라엘인 제품, 이스라엘 내에서 설립된 회사의 제품,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간 제품, 이스라엘 시민 및 이스라엘 거주민이 제조한 제품의 수입을 禁止하고 있다. 1945년 아랍연맹의회에서 결정된 이스라엘 보이콧(the Arab League boycott of Israel) 결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보이콧은 1차(원산지가 이스라엘인 제품과 서비스), 2차(이스라엘과 비즈니스를 하는 비아랍국가), 3차(이스라엘 항구를 경유한 비즈니스)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스라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

○ 중고 놀이기구 수입금지 조치

최근 들어 놀이기구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3년 10월 중고 놀이기구 및 부품들에 대한 輸入禁止 措置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테마 파크들이 낮은 수준의 안전대책을 갖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정기점검에 소홀하다고 판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의 관세청에 5년 이상 된 모든 중고 놀이기구와 그 부품들의 압수를 지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무역산업부, 관광부, 표준청, 관세청, 상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는 놀이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9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 수입허가품목

일부 품목의 경우는 수입을 허용하되, 종교 또는 안전 등의 이유로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Table 31>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허가 품목

No.	HS Code	적 요	담당 부처
1.	01 01 10 10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승마 클럽
2.	01 01 10 20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승마 클럽
3.	01 01 90 10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승마 클럽
4.	01 01 90 20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승마 클럽
5.	06 02 20 10	대추야자수 및 종자	농업부
6.	23 09 90 50	동물사료용 조제품	농업부
7.	28-29류	화학제품	-폭발물질 : 내무부 공공 안전국 -기타 화학물질 : 상공부, 보건부 또는 고고학 및 박물관 관리국
8.	ex 30.03	수의약품	농업부
9.	ex 30.04	수의약품	농업부
10.	25 01 00 30	나트륨 염화물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1.	27.12,(제외 27 12 10 00)	파라핀유, 바세린유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2.	31 02 30 00	폭발하기 쉬운 화약, 추진 파우더, 폭발성 휴즈, 뇌관, 전자 점화물질, 테레빈유, 송진, 셀룰로스 질산염, 알루미늄 파우더 및 포, 마그네슘 파우더 및 포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3.	31 02 5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4.	36 01 0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5.	36 02 0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6.	36 03 00 1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7.	36 03 00 9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8.	25 01 00 3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19.	35 03 00 1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20.	38 05 1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21.	39 06 1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22.	39 12 2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23.	76 03 2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24.	81 04 3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25.	31.02		화학비료
26.	31.03	화학비료	농업부
27.	31.04	화학비료	농업부
28.	31.05(제외 31 02 30 00 및 31 02 50 00)	화학비료	농업부
29.	36 04 10 00	불꽃제품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30.	36 04 90 00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31.	38 08 30 00	제조제, 발육억제제, 식물성장 조절제	농업부
32.	ex 58 07 10 00	군복, 군사용 배지 등	관련 국방부처
33.	ex 58 07 90 00		관련 국방부처
34.	ex 61 01		관련 국방부처
35.	ex 61 03		관련 국방부처
36.	ex 62 01		관련 국방부처
37.	ex 62 03		관련 국방부처
38.	65 05 90 94		뾰족한 모자
39.	65 06 10 30	군사용 헬멧	관련 국방부처
40.	ex 73 26 90 99	군사용 기타 철강제품	관련 국방부처
41.	ex 90 05 10 00	야간투시용 쌍안경	관련 국방부처
42.	83 01 40 20	보안감시장비	내무부 공공안전국
43.	85 25 40 00	보안용 카메라, CCTV 시스템, 침입방지 경보시스템	내무부 공공안전국
44.	85 43 89 20	민간항공용 금속탐지기	내무부 공공안전국
45.	85 31 10 00	마그네틱 카드 또는 지문인식기	내무부 공공안전국

46.	90 22 19 90	보안출입문 및 장비, 금속	내무부 공공안전국
47.	90 22 19 10	소지품 스크린 장비, 출입통제 장비	내무부 공공안전국
48.	84 19 40 00	증류장비	상공부
49.	84 59 61 00	열쇠제작, 복사 및 수리기계 및 관련 기기	내무부 공공안전국
50.	84 59 69 00	열쇠제작, 복사 및 수리기계 및 관련 기기	내무부 공공안전국
51.	84 72 30 00	우편계기	우편관리국
52.	85 25 20 11	군사목적 수송장비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수입된 무선세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기타: 관련부처
53.	85 25 20 19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54.	85 25 20 30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55.	85 25 20 40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56.	85 25 20 50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57.	85 25 20 60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58.	85 25 20 90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비디오 증폭기	정보통신기술위원회
59.	85.26 관련제품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60.	85 42 10 00	휴대폰 칩 및 선불 휴대전화 카드	정보통신기술위원회
61.	ex 87.03	장갑차	내무부
62.	89 02 00 00	납식배	내무부 국경수비대
63.	93류	무기 및 탄약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64.	기타	CITES에 의한 야생동물 및 관련 상품	국가야생동물보호 육성위원회
65.	기타	문화 및 고고학적 상품	고고학 및 박물관 관리국

66.	기타	화폐그림, 지폐모델 등이 그려져 있는 상품	중앙은행(통화국)
67.	기타	박람회 전시용 물품	상공부
68.	84 24 81 10 84 24 81 20 84 24 81 30 84 24 81 90	관개장비	농업부
69.	82.01	농업용 트랙터	농업부
70.	84 13 19 84 13 19 90 84 13 80 84 38 11 00 84 38 20 00	워터 펌프	농업부
71.	84 32 10 00 84 32 21 00 84 32 29 00	경작기	농업부
72.	84 32 30 00 84 32 40 00 84 32 80 00	과중기	농업부
73.	84 33 11 00 84 33 20 00 84 33 30 00 84 33 40 00 84 33 51 00 84 33 52 00 84 33 59 00 84 33 60 00	수확기	농업부

자료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부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 뉴스⁹⁶⁾를 근거로 재작성

○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정물품의 수입물량(수량)을 制限하는 수입쿼터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반덤핑관세·상계관세 등 특별관세를 부과한 실적이 없다.

96) KOTRA(s), *op. cit.*(2016. 9. 28. 접속).

3.4.2.3 原產地管理 制度⁹⁷⁾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발급하던 원산지증명서 공증제도를 활용하여 오다가 2006년 5월 이를 폐지하였다. 현재는 수입상품의 통관 시 수출국 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국가들은 현재까지 자체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WTO 협정과 같은 국제규범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제품 수출 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된 사례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3.4.2.4 知識財産權 保護⁹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知識財産權 保護제도의 목표를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맞추고 모든 분야에서 知識財産權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97) 2013, *op. cit.*, p.141. 2014, *op. cit.*, p.161. 2015, *op. cit.*, p.174.

98) 2013, *op. cit.*, pp.147~148. 2014, *op. cit.*, pp.169~170. 2015, *op. cit.*, pp.182~183.

KOTRA(s), *op. cit.*(2016. 9. 28. 접속).

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知識財産權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년 2월과 2012년 12월 국제지식재산연맹(IPA)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知識財産權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을 USTR⁹⁹⁾제안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知識財産權과 관련된 법률은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상표법(Trademarks Law),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다. 그리고 관리 정부부처로는 특허법(The Law on Patents)은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저작권법(Copyright Law)은 문화정보부, 상표법(Trademarks Law)은 상공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 특허권(Patent)

사우디아라비아는 1989년 1월 KACST에 특허이사회를 설치, 특허법을 제정했으며, 2004년 7월 17일 신티허법(Royal Decree No. M/27)으로 개정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 아래 산업재산권 保護를 위한 과리협정을 시행하는 특허법이다. 신티허법은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디자인, 식물변종에 관한 특허사항이 포함된다. 2004년 12월 신티허법에 따른 특허법시행령(Ministerial Decision No. 118828/M/10)이 제정됐다. 아울러 GCC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는 1992년의 법규가 개정돼 締結된 2001년 GCC 발명 특허 規制도 적용 받고 있다. 이 規制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같은 해 칙령 제M/28으로 採擇되어 전 GCC 국가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특허관련 발명품은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독창적인 공정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이론상의 발명, 수술 방법 및 이슬람 율법과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발명은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 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사우디아라

99)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미국의 무역대표부.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기관(네이버 검색 <https://ustr.gov/>))

비아는 78개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2012년 기준 147개로 GCC국가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취득 시 영문과 아랍어로 번역된 1페이지 개요, 발명배경, 도안 등이 필요하며, KACST에 신청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특허권의 경우 20년, 산업디자인과 직접회로디자인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신 품종과 관련해서는 20~25년 동안 유효하다. 참고로 1999년 GCC 특허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 GCC 국가 내에서도 동일하게 특허권을 保護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자를 기소할 수 있으며, 과징금,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사용중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법위반 시 罰金刑에 처해지며, 재범인 경우에는 加重處罰(罰金 2배 賦課)을 받을 수 있다.

○ 상표권(Trademark)

사우디아라비아 상표권은 1984년 제정되었고 상표권 規制, Royal Decree No. M/21에 의해 2002년 8월 개정되었다. 상표권의 등록을 위한 지원은 상공부 내의 상표권 담당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957년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제도를 따른다. 1984년 제정된 상표권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 마크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헤지라력 10년(약 9년 9개월)이다. 유효기간 마지막 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10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갱신 절차는 처음 등록할 때와 동일하다. 만약, 5년 동안 연속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상표권은 삭제 혹은 취소될 수 있다. 등록된 상표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상호주의에 의해 타국에서도 保護된다. 2002년 12월 신규 개정된 상표권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罰金이 賦課되거나, 최고 1년의 懲役이 賦課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2배로 加重處罰될 수 있다. 등록된 상표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相互主義에 의해 他國에서도 保護된다.

참고로 2002년 12월부터 적용된 상표권법은 상업용과 산업(공업)용 구분과 명료함을 위해 상표권 등록 시 고유의 이름, 단어, 숫자, 모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공부에서 60일 이내의 상표권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됐을 경우 90일간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마지막으로 상공부에서 거부할 시 신청자는 30일 내 고층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 상표권법에서 음란물, 술과 같이 이슬람 율법, 공공 질서와 도덕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표현, 표시(사인), 그림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宗教와 宗教儀式 및 순수하게 宗教의 본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현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심볼, 지역 이름, 냄새와 소리 등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 등도 등록이 不可能하다.

3.4.2.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¹⁰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保護,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環境保護 및 非正常的인 去來防止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流通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品質標準을 정하고 해당 標準에 적합한 경우에만 流通을 許容하고 있다. 자국 내 流通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標準은 국가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流通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標準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표준규정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100) 2013, *op. cit.*, pp.143~144. 2014, *op. cit.*, pp.163~165. 2015, *op. cit.*, pp.175~178. KOTRA(s), *op. cit.*(2016. 9. 30. 접속).

MoCD), 자국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非關稅障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자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자국의 규격과 標準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중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 부품, 가스 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

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 (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2012년 이전 지식경제부)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 인정 프로그램)를締結해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한국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締結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交易 확대에 걸림돌로 指摘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동 인증제도가 輸入規制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保護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 輸入規制가 아니라는 입장을 維持하고 있다.

○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아라비아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免除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에서 提示하는 基準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 등록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약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의 등록이 필수이며, 현지 수권대표자(에이전트)를 통해 등록,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SFDA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관련 規制 당국으로 2007년 설립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록을 관장하며, 유통·판매의 규제·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SFDA는 환자들의 健康과 安全의 確保 및 維持를 목표로 의료기기 감시체계를 포함한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활동과 시장관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기 및 관련 업체들은 S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SFDA는 제품 관련 필수 표준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인증제도(SASO)를 통해 제품에 대한 표준을 규정한다. 제품 테스트는 SFDA나 보건부 산하 기관의 연구소에서 수행되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조사도 담당하며, 수출입은 물론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광고 등에 대한 規제도 수행하며, 모든 제품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SFDA 承認이 필수이다.

<Table 32>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 등록제도 개요

인증구분	강제인증
도입시기 및 근거규정	도입시기 : 2008년 12월 27일 근거규정 : SFDA 명령 1-8-1429, Medical Devices Interim Regulation
규제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적용대상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인증절차	TYPE C
시험기관	의약품의 경우 SFDA에서는 시험기관 미보유
인증기관	해외 인증기관명: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audi Food & Drug Authority) GHTF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EU, 일본, 호주의 인증을 받은 제품 GHTF는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파악됨.
유의사항	인증 미취득 시 수입, 유통, 판매 불가. 사우디 국외 의료기기제조업체의 경우 사우디 내의 수권 대표자를 임명해 해당 제품을 SFDA에 등록 및 마케팅 인증 취득

자료 :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KOTRA 해외시장 뉴스¹⁰¹⁾를 근거로 재작성

3.4.2.6 環境關聯 規制¹⁰²⁾

사우디아라비아는 環境關聯 規制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環境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담수공사(SWCC)와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부(MOP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環境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環境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環境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保護指針을 부과하고 있다.

101) KOTRA(s), *op. cit.*(2016. 9. 21. 접속)

102) 2013, *op. cit.*, p.144. 2014, *op. cit.*, p.166. 2015, *op. cit.*, p.179.



제 4 장 通商障壁의 分析 및 評價

4.1 關稅率 政策

세계 각국의 平均 關稅率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영향으로 꾸준히 인하되는 趨勢이다. 先進國의 경우 平均 實行關稅率은 6% 수준 이하이며, 開途國의 경우도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 15%-20% 선으로 낮아지고 있다.¹⁰³⁾ 研究對象國의 現行 平均 關稅率을 정리해 보면, 아래 <Table 33>의 내용과 같이 先進國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開途國의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趨勢임이 확인된다.

<Table 33> 연구대상 국가별 HS Code체계 및 평균 관세율

구 분	베트남	인 도	멕시코	사우디
HS Code	8단위	8단위	8단위	8단위
평균관세율	9.5%	10%	3~5%, 10~13%, 15~20%, 23~35%	5% 또는 12%대

또한, 刮目할 만한 사항은 국가별로 자국에 필요한 다양한 通商政策 중 특히, FTA를 적극 활용하여 협정당사국과의 交易 시 關稅負擔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물품에 대한 소비시장에서의 가격(원가)은 결국 수입통관 시 關稅 등 稅金에 대한 負擔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상품가격의 競爭力과 직결 된다.

<Table 34> 연구대상 국가별 시행중인 FTA

103) 산업통상자원부, 2015 외국의 통상환경(제2권 분야별 통상환경), p.5, p.23.

구 분	2015년 현재 발효중인 FTA 현황
베트남	A.TIGA(아세안), AKFTA(한-아세안), ACFTA(아세안-중국), AJFTA(아세안-일본), VJEPA(베트남-일본), AANZ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 AIFTA(아세안-인도), VCFTA(베트남-칠레), VKFTA(한-베트남)
인도	서남아국가연합(SAARC), 인도-태국 자유무역협정(CECA), 인도-싱가포르CECA, 인도-말레이시아 CECA, 인도-일본 CECA,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
멕시코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5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시행 중임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는 GCC공동체의 일원으로 FTA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발효중인 FTA는 GCC-싱가포르 FTA, GCC-레바논 2개 FTA임

그러나 한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保護의 手段으로 활용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이는 취약산업 또는 戰略産業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관세율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研究對象 4개국은 모두 開途國에 해당되는 국가들로서 위와 같은 큰 국제적 흐름속에서 나름의 關稅率 政策을 시행하고 있다. 研究對象國別 세부적인 核心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關稅障壁은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일본·중국·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締結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 평균관세율을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 가입후 계속 인하하여 2013년도에는 9.5%로 낮아졌다. 그리고 2015년 12월 發效된 한국과의 양자간 FTA를 비롯해 미국 등과의 TPP,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發效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간 업그레이드형 FTA인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더 높은 자유화 수준에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을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關稅를 撤廢키로 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保護하는 주요한 手段으로서 關稅를 活用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써 2014/2015 회계연도 중앙정부의 세수 중 9% 가량을 징수한 바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는 2007년 10%로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 산업 保護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하였던 것을 2010년 다시 10%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10년 1월 한-인도 CEFA의 發效로 關稅가 대폭 下향조정 내지는 撤廢되었다.

멕시코의 關稅체계는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0%가 적용되는 것은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써 가치를 갖는 품목이다. 그 외 멕시코 내 생산여부, 자본재 및 부품인지 소비재인지 여부에 따라 3~5%, 10~13%, 15~20%, 23~35%로 구분된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關稅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연방관보를 통해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에 대한 關稅인하 방안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關稅引下 政策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引下가 예정되어 있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引下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關稅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關稅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關稅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幼稚産業 保護品目은 20%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賦課 중이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

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免除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平均 關稅率은 5% 또는 12%대 이다.

4.2 輸入規制

輸入規制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을 일방적으로 制限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規制는 輸入禁止이고, 그 외에는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갖추면 수입이 허용되는 유형들이다.

輸入禁止는 주로 國家安保나 社會安全, 國民保健 및 環境保護 등을 目的으로 각 나라마다 相關품목들을 指定 놓고 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이나 종교적 신념 등이 반영된 품목의 수입금지도 있다. 이는 정부당국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지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오랜 기간 쌓여 온 정서나 공감대 등 국민의 공유된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형태의 輸入規制는 輸入禁止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시행되며 대상품목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지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輸入禁止 대상품목은 수출국의 緩和노력이나 對處方案에 따라 좌우될 여지는 거의 없고, 그 외 輸入規制 등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戰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市場確保의 競爭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研究對象 국가별 輸入禁止 대상 물품을 정리·비교해 보면 아래 <Table 35> 내용과 같다.

<Table 35> 연구대상 국가별 수입금지 대상 품목

구 분	2015년 현재 수입금지 대상 품목
베트남	무기류, 폭발류(공업용은 제외), 군사장비/ 중고 생활용품/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반동 문화품/우측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핸들 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화학무기 금지협정(CWC)상 독성 화학물질의 전구체(Schedule I)
인도	동물의 고기, 유지 등 지정 60개 품목. <Table 20>내용 참조
멕시코	포식어류, 마약, 유해물질, 반사회 활동을 야기 할 수 있는 전사지 등. <Table 27>내용 참조
사우디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非할랄 제품, 주류관련 제품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非의료용 약품,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광고를 사용한 제품이나 성인잡지 등 H.S Code 8단위 기준 92여개 품목, 모조품이나 위조상품. <Table 34> 내용 참조

研究對象 국가별 輸入規制의 세부적인 核心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위 <Table 35>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외에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制限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關係部處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嚴格히 관리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 12월 식물성 기름(Vegetable Oil)에 대하여 지정여부를 조사해 規制對象으로 확정된 뒤,

2013년 5월 7일부터 1년차(1년간) 規制로 긴급관세율 5%를 시작하여 2016년 5월 7일부터 4년차(1년간) 規制로 긴급관세율 2%의 특별관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規制措置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덤핑관세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 4건에 대하여 措置를 취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되는 품목이 없고 상계관세에 대하여는 아예 개시한 事例가 없다.

인도의 품목별 輸入規制는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輸入專賣品目(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輸入制限品目(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輸入制限品目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에, 수입전매 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의 중고 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制限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몸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도 規制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는 현재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며, 2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수출물품 중 인도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은 구연산나트륨, 포화지방알콜, 무용접강관, 디옥틸프탈레이트이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과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이다. 또한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措置를 취하는 나라이다. 2015

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1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아크릴단섬유,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고무, 가성소다-3,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2, 나일론필라멘트사, 탄산칼슘, 아세톤-2, 석유화학 첨가제(Rubber Chemicals), 인산, 600~1250mm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PVC 수지(PVC paste Resin), 프탈산무수물(Phthalic Anhydride), 폭 600mm 이하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메틸렌클로라이드, 질산나트륨, Cast Aluminium Alloy Wheels, 고순도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Cast Aluminium Alloy Wheels, 질산나트륨, USB flash drives, 고순도테레프탈산, 스테인리스열연강판 304쓰리즈, 페놀, 2-에틸헥산올(2-Ethyl Hexanol),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다. 상계관세는 2015년 6월말 부과하고 있는 事例가 없다.

멕시코는 <Table 35>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 무역업자로만 등록이 되면 대체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석유 함유 제품, 무기류, 폭발물, 군사차량, 중고타이어, 해외공관직원 차량, 중고컴퓨터, 방탄차량, 견인차 등은 사전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制限的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締結 시 자동차 市場에 대해 단계적으로 開放하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 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주관한다. 수입수량할당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制限하는 措置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멕시코는 2015년도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 품목의 쿼터조치가 發效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01~2002년까지 2건이 있었으나 최근 事例가 없으며,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4개국 35품목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2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措置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하나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덤핑관세 부과된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이고, 다른 하나는 1993년 8월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措置를 연장해오고 있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이다. 상계관세는 賦課事例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품 전반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비(非)할랄 제품, 주류 및 관련 제품과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비롯,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非)의료용 약품,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광고를 사용한 제품이나 성인잡지 등 HS Code 8단위 기준 약 92여 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環境保護,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는 거래 품목에 관계없이 직접무역을 禁止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경우이다. 그 외에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이 자유로우며 특히, 폭발성 물질, 군사용 물품, 농업용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되 관련절차에 따라 사전에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정물품의 수입물량(수량)을 制限하는 수입쿼터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반덤핑·상계관세 등 특별관세를 賦課한 事例가 없다.

4.3 原產地管理 制度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하여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그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절차 및 관련 부대 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원산지규정이 通商障壁으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통상적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이러한 현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또한 FTA 締結의 증가와 특혜조치 등 확대로 국가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研究對象 국가별 원산지규정을 檢討·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협정)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EPT 제도는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는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가 發效됨에 따라 이전의 한-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의 核心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로 합의하였으며,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追加하여 相互間의 便宜를 提高하였다.

인도는 별도의 일반(비특혜)원산지규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필요한 경우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특혜원산지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인도가 締結한 무역협정은 APTA(아세아·태평양무역협정),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협정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양자의 경우, 한-인도 CEPA 협정이 2010년 1월부터 發效되었다. 한-인도 CEPA 협정 상 원산지규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실질적변형기준 대상의 경우, 세번변경(일반적으로 6단위 변경)과 역내부가가치(일반적으로 35%)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도입되었으며, 기타 미소기준 도입 등으로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緩和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의 원산지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위조되어 반입되는 事例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措置로 1995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동 措置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서 동 措置를 解除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 수출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제도를 2006년 5월 廢止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수출국의 정부가 지정한 유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禁止된 事例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된 事例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證憑을 철저히 準備할 필요가 있다.

4.4 知識財産權 保護

知識財産權의 국제적 保護는 1986년 UR출범과 더불어 위조 상품을 포함한

무역관련 知識財産權 保護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면서 GATT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무역관련 TRIPs협정이 타결되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交易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知識財産權에 대하여 그 保護基準,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¹⁰⁴. 開途國에서의 지재권 분야 通商障壁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開途國에서도 지재권 관련 관심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研究對象 국가별 知識財産權 保護 주요 核心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知識財産權 保護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이전법, 산업재산권 보호법, 저작권 보호법을 차례로 제정한 뒤,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知識財産權 侵害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知識財産權 保護를 위한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감찰단, 산업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하 경제경찰,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다. 이에 더하여 知識財産權 保護에 대한 법률과 措置를 보완하고 있으며 知識財産權 保護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知識財産權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이 있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법(1970/2005 개정), 저작권법(1957/2012 개정), 상표권법(1999/2002 개정), 디자인권법(2000) 등의 지재권 保護

104)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제2권 분야별 통상환경)*, pp.229~236.

를 위한 입법·행정·사법 제도가 기본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知識財産權 侵害率이 높고 保護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評價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先進國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인도는 EU와 FTA 협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회담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2015년 4월 인도의 공중보건에 관련된 단체 및 제약회사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인도에서 제조된 값싼 의약품들에 대하여 엄중한 특허제도의 적용을 요구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재권 保護에 대한 脆弱性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을 통해 지재권 保護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知識財産權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市場流通이 많은 편이다. 멕시코의 知識財産權은 크게 특허,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원산지표시, 산업기밀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의 경우 1996년 發效된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별도로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판을 치고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 市場은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知識財産權 保護制度의 목표를 WTO 무역관련 知識財産權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맞추고 모든 분야에서 知識財産權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保護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知識財産權 侵害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년 2월과 2012년 12월 국제지식재산연맹(IIPA)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知識財産權 侵害率,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을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4.5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

TBT·SPS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特徵은 先進國의 경우 과도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開發國의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상품표시부착과 검사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요건을 부가하는 事例가 흔히 있다. 품목별로 보면 先進國들은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開發途上國들은 소비재공산품, 전기 및 가전제품 등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국가간 마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研究對象 4개국의 경우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규격에 관한 制度가 복잡하고 公正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標準規格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標準規格에 맞추어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장비를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強制하고 있다.

인도는 90개 수입품목에 대해 인도품질표준(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제조업자와 수출업체가 제조설비를 사전에 인도표준청의 검사·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制限하는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指摘이 있다. 특히, 規制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指摘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외국제품에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抑制하는 手段으로 惡用되고 있다는 指摘이 있다.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인 NOM(Norma Oficial Mexicana)은 당초 자국의 소비자保護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결국 輸入規制 手段으로 활용되고 있다. 멕시코 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 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의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총 23개이며,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사전협약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멕시코에서 직접 사전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품목이 追加될 경우, 充分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하고 있어 수출국가의 큰 隘路事項으로 불평대상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반입 전에 수입상품의 표준에 대한 適合性 評價, 검사 및 인증과 관

련된 국제인증제도(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 제도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 절차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交易 擴大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동 인증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이후 2006년에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COCP)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基準에 따라 인증을 取得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4.6 環境關聯 規制

일반적으로 미국·EU 등 先進國들은 다양한 環境關聯 規制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도 環境保全을 위하여 취한 각종 措置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先進國의 環境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環境保護 본연의 취지와 배경을 넘어 과도한 수준으로까지 이어져 通商障壁의 큰 부류가 되었고, 대부분의 開途國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環境規制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先進國 뿐만 아니라, 開途國의 環境規制 역시 강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趨勢이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의 對 開途國 輸出戰略 수립 시 環境問題도 고려해야 할 중요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研究對象 4개국의 環境關聯 規制內容을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베트남은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베트남 환경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법과 동일하나 기업의 투자 시 일정부분을 환경보호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명문화, 베트남의 環境保護 마스터플랜 추가, 재활용 폐기물 수입 規制強化 등이 골자이다. 環境保護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環境

基準을 준수해야 하며 環境基準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와 중고기계 및 장비(環境安全基準, 生産年度 制限), 폐기대상 운반구 및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도는 헌법으로 環境保護를 制度化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直接規制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環境規制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環境關聯規制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環境關聯 規制 중에서 특히, 사전 環境承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環境오염을 유발하는 계획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環境汚染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環境承認이 필수적이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에 합치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環境保護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마킬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環境保護 基準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새로 개정된 에너지 개혁법에 따르면 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環境關聯 規制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環境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부(MOP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環境保護基準 遵守,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環境保護基準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保護指針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環境關聯 規制는 아직도 큰 通商障壁 수준은 아니다.





第 5 章 對處方案

본 論文의 目的에 따라 본장에서는 제4장을 통하여 밝혀진 국가별 通商障壁에 대한 對處方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對處方案은 본 論文의 研究對象으로 특정된 국가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通商障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1 通商外交의 擴大 및 強化

交易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先決 條件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通商關聯 外交라 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外交가 다 그러하겠지만, 通商外交는 國家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交易은 상품을 매개로 한 國際間的 交流이다. 즉, 한쪽에서는 물품을 공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 대가로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가 相互間的 交流이다.¹⁰⁵⁾ 交易의 형태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분히 雙務的이며, 상호 互惠的인 입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따라서 交易은 일방적이거나 특정 국가만을 위주로 해서는 성립되기 어렵다. 국제거래 시에는 만약,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好意的이면 상대국도 互惠的인 關係를 維持하려고 할 것이나, 반대로 規制하고 制限하면 상대국도 같은 수준 이상의 規制와 制限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通商摩擦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가까워 지기가 매우 어려운 사이였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戰 참전 시 자유진영을 支援했지만, 戰爭은 공산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베트남은 사

105) 남풍우, 2001. 무역상무론, 도서출판 두남, pp.4~25.

회주의 체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放의 물결과 함께 국가정상의 交叉的 방문 등 적극적인 外交活動으로 인해 友好的 關係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상호교류와 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선순환적 親密關係가 유지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通商問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는 현지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外交的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상대국과 葛藤關係를 갖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10년 베트남에 進出한 우리기업이 많아지면서 관세,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자, 우리 현지 공관에서 유사형태의 민원을 집약해 베트남 중앙세무당국과 정례 懇談會를 제의해 이를 수습하고 개선한 바 있는데, 이는 通商外交 노력의 매우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事例¹⁰⁶⁾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關係도 어느 순간 서로의 利害對立이 생기고 접근 방법이 매끄럽지 못하면 不知不識間에 냉각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 대표적인 事例로는 오래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로 야기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通商摩擦 예를 들 수 있다. 2000년 6월 우리 정부가 기존 기본관세율 30%이던 중국산 냉동 초산조제 마늘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관세율 60~285%부과)를 결정하자, 같은 달 중국정부는 곧 바로 보복조치로써 한국산 휴대전화기 및 폴리에틸렌수지의 수입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당황한 우리정부는 버섯 등 다른 농산물에 부과되어 있던 조정관세를 引下하는 등의 별도의 적절한 보상방법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하여 원만한 妥結이 이루어지지 않아 通商外交上 뼈아픈 經驗이 되었다.¹⁰⁷⁾

현재 經濟協力關係가 원만하고 友好的인 베트남 등 본 研究對象 국가들

106) 외교통상부, 2010.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세무대화 정례개최로 세무민원의 제도적 해결), pp.6~8.

107) 1999년 실적기준, 우리나라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중국산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수입금액은 898만 달러 상당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측에 수출한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수지의 수출금액은 도합 5억1,270만 달러 상당으로서 동건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통상마찰로 입게 된 결과는 단순금액을 대비하면 57배의 손해가 예상되었음(chosun.com 2000. 6. 8. 검색 Key Word “마늘 분쟁 전말”).

과의 交易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가 없으리라는 保障이 없다. 通商政策上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은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소중한 열쇠가 된다. 通商外交의 目標은 국익이 최우선되어야 하나, 그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通商外交는 卽興的이거나 一時的이어서는 안 되며,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通商에 관한 政策은 一方的이 아닌 雙方間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간 交易에 있어서는 영원한 同伴者나 영원한 敵對國도 없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어려운 때 우리를 지지해 줄 親韓的 분위기를 평소에 조성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넷째, 交易 相對國에 대한 通商情報 수집은 곧 通商外交의 기본이고 출발점이다. 이에 더해 交易하기 좋은 通商環境을 조성하고, 만에 하나 通商摩擦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關係를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通商政策 關係者 육성과 體系化된 매뉴얼 등도 마련(또는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5.2 公正한 貿易慣行 定着

公正貿易(fair trade)의 사전적 의미는 競爭原理 및 去來秩序를 侵害하지 않은 正當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거래를 말하며, 이는 均等한 競爭條件(level playing field) 하에서 이루어지는 貿易을 뜻한다.¹⁰⁸⁾ 따라서 公正貿易은 더욱 투명하고 公正한 방식의 貿易을 통해 국가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이하로 낮추는 덤핑이나 보조금을 통해 수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등은 相對國의 競爭市場을 攪亂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타인의 知識財

108) 기획재정부, 2008. 관세·무역 용어집, p.222.

産權을 侵害하는 물품의 수출입·판매 행위, 그리고 원산지·품질·규격 등 각종 표시의 허위 또는 과장 행위 등도 不公正貿易의 일반적 형태이다. 자유주의적 無限競爭이 무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國際間 交易 環境 하에서 公正貿易은 그 어떤 무역원칙보다도 중요시 되며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公正貿易原則은 國際貿易의 기본이자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조에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公正한 去來秩序를 確立하여 國際收支의 均衡과 通商의 擴大를 圖謀함으로써 國民 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해 公正去來를 對外貿易의 基本原則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는 2001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 무역거래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國內産業의 被害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였다. 같은 해 5월 공포·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한 國內産業의 被害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WTO의 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⁹⁾

한편, 국내기업이 輸出相對國에서 반덤핑제조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비용 및 조사협조 등에 따른 직·간접 형태의 비용을 負擔해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賦課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우려 등으로 당해국가 수입자는 국내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으로 거래선을 바꿀 가능성이 많아 어렵게 개척한 海外 市場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나 덤핑방지관세 賦課가 頻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정상기준을 넘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不公正 의심 품목에 대한 通商規制를 強化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109) 조영재, 2001.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내용 해설. 관세와 무역 2001.6(통권 제368호), pp.35-39.

예방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 慣行을 定着하여 不公正去來의 불신을 아예 遮斷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만약, 해당국의 근거 없는 不公正은 非나 관련 규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불합리한 通商規制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2008년 12월 8일 인도상공부 반덤핑총국(DGAD)이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15개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열연강판 제품(Hot Rolled Steel Products)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개시를 통지하자, 우리 정부는 인도 진출기업인 포스코, 삼성물산, LG상사 등 주요 철강 수출업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반덤핑조사의 종결을 강력하게 제의함으로써 인도 제조업체의 조사신청 철회를 명분으로 해당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事例¹¹⁰⁾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극복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知識財産權이나 원산지 및 각종 표기사항에 대한 부정·위반행위도 마찬 가지이다. 권한이 없는 知識財産權 물품을 수출한다거나 더 나아가 위조·변조·모조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사항 등으로 流通市場을 혼란케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나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交易 相對國들도 갈수록 이를 강화키 위해 법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나 조직을 재정비해 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강력한 規制를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不公正貿易은 자유롭고 公正한 수출입 질서를 攪亂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로 국제적 交易에 있어 公敵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不公正貿易은 流通秩序를 攪亂시키는 한편, 내·외국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에 대한 不信을 갖게 해

110) 외교통상부, 2009.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대응 및 동결 지원), pp.41~42.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아울러 상대국에게 通商規制의 빌미를 제공하여 通商摩擦을 야기하는 등 對外交易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생산기업이나 수출업체에 있어 公正한 貿易慣行의 定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문이다.

5.3 FTA의 持續的 擴大 推進

1995년 WTO의 출범이후 世界經濟는 FTA을 통한 지역주의가 擴散되는 趨勢이며, 이러한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¹¹¹⁾ 이 지역주의의 擴散背景은 FTA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RTA¹¹²⁾(Regional Trade Agreement)형의 EU¹¹³⁾나 NAFTA 등이 성공적으로 연착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可視化 되었기 때문이다¹¹⁴⁾.

FTA는 條約 회원국 間 通商障壁을 緩和하거나 撤廢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그 目的이다. 이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保護主義의 擴散과 지역이기주의의 表出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회원국들 相互間 特惠的 措置를 적용함으로써 比較優位 분야에 대한 交易의 增進과 이에 따른 厚生의 향상을 圖謀할 수 있고, 通商 協商力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각국이 수출입시장을 넓히기 위해 경쟁적으로 FTA를 締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發效를

111) WTO에 보고된 자유무역협정의 수는 2015년 11월 기준 총404건이 발효되었으며 그 가운데 354건(87.6%)건이 1995년 WTO 출범이후 발효된 것이다(이영달, 2016.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pp.19~20.).

112)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통상용어, p.96.).

113) EU(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출범한 유럽연합 기구이다. EU의 전신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이며 회원국은 초기12개국이었으나 크로아티아가입을 마지막으로 28개국으로 되었다가 최근 영국(블랙시트) 탈퇴중이어서 27개국이 될 예정이다(외교부, 2015. *유럽연합개황*, pp.3~28.).

114) Steven Husted, Michael Melvin, 1999. *International Economics*. Addison Wesley, pp.303~326.

시작으로 2016년 10월 현재까지 15개 FTA(1개 CEPA 포함)에 52개국¹¹⁵⁾과 협정을 發效시킨 바 있다. 정부가 칠레를 첫 번째 대상국으로 選定한 이유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模範國으로서 자유화의 방향이 우리와 유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과는 매우 보완적이라는 점과 중남미 進出의 橋頭堡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와 締結해 發效된 FTA의 현황을 보면 아래 <Table 36> 내용과 같다.

<Table 36> 한국의 발효 중인 FTA 현황

상대국	추진내역			의 의
	협상개시	서 명	발 효	
칠레	1999. 12월	2003. 2월	2004. 4월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 1월	2005. 8월	2006. 3월	아세안시장 교두보
EFTA ¹¹⁶⁾	2005. 1월	2005. 12월	2006. 9월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 ¹¹⁷⁾	2005. 2월	2006. 8월	2007. 6월	한국 제2위 교역대상
인도	2006. 3월	2009. 8월	2010. 1월	BRICs국가, 거대시장
EU ¹¹⁸⁾	2007. 5월	2010. 10월	2011. 7월	세계최대 경제권
페루	2009. 3월	2011. 3월	2011. 8월	자원부국, 중남미시장 교두보
미국	2006. 6월	2007. 6월	2012. 3월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2010. 4월	2012. 8월	2013. 5월	유럽·중아시아의 진출 교두보
호주	2009. 5월	2014. 4월	2014. 12월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 7월	2014. 9월	2015. 1월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 5월	2015. 6월	2015. 12월	한국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 6월	2015. 3월	2015. 12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5) 201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된 FTA는 15개에 총 54개 국가이나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한-아세안(지역) FTA와 한국과 개별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어 국가수로는 52개국임.

베트남	2012. 9월	2015. 5월	2015. 12월	한국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2009. 12월	2013. 2월	2016. 7월	자원부국, 중남미의 신흥시장

자료 : 관세청 FTA Portal 자료¹¹⁹⁾를 근거로 재작성

FTA는 계약 당사국간에 관세 및 기타 수입제한조치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經濟統合의 여러 유형 중 가장 기본적 형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研究對象에서도 4개국(베트남,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 2개국(베트남, 인도)이 이미 FTA를 締結하여 시행중이고,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GCC회원국)도 우리나라와 FTA 여건조성 중¹²⁰⁾에 있다.

FTA와 交易活性化의 相關關係는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事例에서도 이미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멕시코와 같이 비교적 관세율도 높고, NOM 제도처럼 일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요건의 구비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래 상대국에 대해 단순히 友好的 次元의 經濟協力 關係로 그치지 않고, 보다 수준 높은 무역원활화의 총화적 형태인 FTA 締結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7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멕시코 巡訪을 계기로 조성된 協力靄圍氣를 바탕으로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입찰에 우리기업이 참여를 원했으나 ‘FTA 체결국 조건 부과 관행’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재 멕시코 한국상공회의소 및 멕시코 進出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에 대해 입찰 조건을 緩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멕시코 FTA 締結의 필요성과

116)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1&layoutMenuNo=30710) (2016. 9. 27. 접속).

117) ASEAN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ibid, 2016. 9. 27. 접속).

118) EU 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ibid, 2016. 9. 27. 접속).

119)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1&layoutMenuNo=30710 (2016. 9. 27. 접속).

120) 이영달, *op. cit.*, pp.2-3 ‘대한민국 FTA Network Chain’ 표 참조.

시급성을 반증하는 결정적 事例¹²¹⁾라 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존 先進國들보다 상대적으로 內需市場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交易活性化 특히, 輸出市場 擴大는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FTA의 持續的 擴大 推進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5.4. 地域的·宗敎的 特殊性 提高

국가 간 거래는 比較優位 및 國際分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품의 진정한 競爭力은 公開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에 의해 評價된다. 세계의 소비자들이 높이 評價해주는 흠 없고 좋은 제품은 수요자의 확대에 따른 대량 생산은 물론, 交易相對國의 貿易規制에 의한 여러가지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比較優位와는 전혀 상관없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規制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할랄’ 基準이다. 상품의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할랄’ 基準을 充足시키지 못할 경우, 그러한 상품은 그 市場에 進出하는 것 자체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비단, 사우디아라비아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6억 이슬람권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基準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지역으로 수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일부 컨설팅 기업에서는 ‘할랄’ 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地域이나 특별한 宗敎的 規制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地域的·宗敎的 特殊性을 필수적으로 釐查해보아야 할 것이다.

121) 외교통상부, 2010.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세무대화 정례개최로 세무민원의 제도적 해결), pp.270~271.



第 6 章 結 論

본 論文은 우리나라의 주요 交易國 중에서 그 交易規模가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成長 潛在力이 큰 交易 相對國을 選定하여 그 나라의 通商環境 實態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交易을 가로막는 通商障壁을 檢討·分析한 뒤, 이를 解決할 수 있는 對處方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通商擴大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研究對象 국가의 選定 基準은 ① 우리나라의 交易 對象國 중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기간 중 10년 단위마다(1995년도, 2005년도, 2015년도)의 수출실적이 모두 30위 이내이며, ② 20년 기간 중 전/후(1995년도/2015년도)를 비교할 때 수출금액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한 국가로 설정하여 이러한 基準에 부합하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을 研究對象 국가로 選定하였다.

研究對象 국가의 通商障壁은 그 手段별로 關稅率 政策, 輸入規制, 原產地管理 制度, 知識財產權 保護, TBT·SPS(貿易 技術障壁·衛生 및 植物衛生 措置), 環境關聯 規制의 6가지로 분류하여 分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關稅率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 관세를 제외한 비관세 분야에서도 평범한 通商規制 이외에 눈에 띄이는 通商障壁은 별로 없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것은 한-베트남 FTA 締結의 효과로 볼 수 있다. FTA 締結過程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이나 TBT·SPS 관련 분야 등 여러 비관세 분야 協商을 통하여 양국간 通商에 障壁이 될만한 부분을 미리 확정해 둔다. 따라서 FTA 협정 締結은 관세 및 비관세 障壁을 없애거나 緩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關稅障壁도 우리나라와의 CEPA 締結로 인해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나 輸入規制 부분 특히, 덤핑관세부과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둘 다 세계 제1위의 惡名을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例外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덤핑관세부과와 긴급수입제한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56건의 덤핑관세 대상 조사를 개시하여 총 39건에 대해 반덤핑措置를 취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했으며 2건에 대하여 타당성 예비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TBT·SPS 분야에서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交易物品에 대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석하여 거래 상대국과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WTO 紛爭解決 機構에 제소된 바도 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그 동안의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自國內 産業을 保護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貿易收支 赤字를 緩和하기 위한 措置로 評價된다.

멕시코의 關稅率은 본 論文의 研究對象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며, 그 體系도 다양화 되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자본재 < 소비재 < 농수산물 順이다. 특히, 멕시코는 TBT 분야에서 높은 通商障壁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멕시코는 자국민 保護를 위해 강제인증제도인 표준규격제도(NOM)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는 상호인증 협약에 따라 상대 수출국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除外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품목을 充分한 예고 없이 追加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게도 높은 通商障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이어의 경우, 패턴별로 멕시코에서 NOM을 獲得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패턴의 검사비용이 대략 3,000달러로써 그 費用 負擔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타이어의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NOM 마크는 인증발급기관(ANCE, NTCE)의 기관 마크와 함께 표시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조건을 맞추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것으로 評價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通商障壁은 ‘할랄’이다. 할랄은 아랍어로 ‘許容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律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許容된 제품을 總稱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즉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과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禁止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이슬람권 국가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할랄’ 基準에 맞지 않는 물품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통관이 어렵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는 거래 품목에 關係없이 직접무역을 禁止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그 외에 본 論文의 研究對象 4개국에 공통된 것으로, 不法複製 등 知識財産權에 대한 侵害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環境保護를 위한 規制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도 通商障壁으로 指摘될 수 있다.

본 研究를 통하여 밝혀진 通商障壁에 대한 對處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通商外交의 擴大 強化이다. 通商外交의 擴大 強化는 FTA의 締結을 위한 토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締結된 FTA를 원활히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며 또한 양국간의 通商摩擦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通商摩擦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公正한 貿易慣行의 定着이다. 不公正貿易은 자유롭고 公正한 수출입 질서를 攪亂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 하나의 犯罪行爲로 國際的 交易에 있어 公敵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不公正貿易은 流通秩序를 攪亂케 하는 한편, 내·외국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해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相對國에게 通商規制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通商摩擦을 야기하는 등 대외교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생산기업이나 수출업체에 있어 公正한 貿易慣行의 定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FTA의 持續的 擴大 推進이다. FTA는 締約 회원국 간 通商障壁을

緩和하거나 撤廢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들 相互間 특혜적 措置를 적용함으로써 比較優位 분야에 대한 交易의 增進과 이에 따른 厚生의 향상을 圖謀할 수 있고, 국제 協商力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FTA는 그 협상을 통하여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특혜조치를 포함시키므로써 양국간의 交易의 均衡에도 기여를 하게 되므로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른 通商摩擦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넷째, 地域的·宗教的 特殊性 提高이다. 국가 간 거래는 比較優位와 國際分業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比較優位와는 전혀 상관없이 특정 地域이나 특정 宗教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規制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할랄’ 基準이다. 상품의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할랄’ 基準을 充足시키지 못할 경우, 그러한 상품은 이슬람권 국가의 시장에 進出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에 進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한 地域이나 특별한 宗教的 規制가 있는 경우는 그러한 地域的·宗教的 特殊性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들 “情報力이 곧 競争力이다”라고 한다. 외국과의 通商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상을 바로 알고 그에 맞추어 對處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世界經濟環境 하에서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無限競争 時代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戰略이자 곧 生存方法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는 交易 相對國의 通商環境을 더 細心하게 관찰하고 미리 對處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겠다. 그리고 通商分野의 측면적 支援이 될 수 있는 많은 研究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 여겨진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권재중 등, 1994.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풍우, 2001. *무역상무론*. 도서출판 두남.
- 변동욱, 2015. *최신베트남 세법*. 문커뮤니케이션.
- 성운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주)협동문고.
- 신유균, 1999. *신국제통상의제와 WTO*. 도서출판 미네소타
- 유현석, 2003. *국제정서의 이해(9.11테러와 지구촌아젠다)*. 한울아카데미.
- 이명구, 김용태, 2007. *관세정책과 관세법*. (주)협동문고.
- 이서영, 2012.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Halal) 인증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영달, 2016. *FTA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 이종익, 최천식, 박병목. 2016. *관세법 해설*. 세경사.
- 장병철, 1981. *최신 관세법*. 무역경영사.
- 정용화, 홍영선, 2000.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 관세청, 2000.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관세청.
- 관세청, 2000. *경제국경에서 한국경제와 함께한 30년(관세청 30년사)*. 관세청.
- 관세청, 2000.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관세청.
- 관세청, 2016. *인도 관세법*. 관세청.
- 기획재정부, 2008. *관세·무역용어집*.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2013. *통상무역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2009.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0.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2001. *최근 우리경제의 현안과 과제*. 재정경제부.
 한국무역협회, 2014. *외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총람*. 한국무역협회.

2. 논문

김동규, 2010. *한국-베트남간 경제현황과 교역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6(1).
 나성길, 1999.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박종하, 2002. *세계주요국가의 무역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고려대학교.
 성윤갑, 2004.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건국대학교.
 송송이, 2013. *인도시장 진출 10계명*.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2(5).
 송현미, 2016.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19).
 유승진, 2016. *멕시코 경제동향 및 우리기업의 기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6년 제11호.

유종선, 2012, *미국사 다이제스트(87.악몽의 전쟁, 수렁에 빠진 제국)*. 가람기획.

이명구, 1999.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이성형, 전정기, 박종하, 2016.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7호.

이승근, 2000. *WTO 체제 하에서의 관세율 정책의 변화추이와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임정성, 2015, *사우디에 대한 7가지 오해와 기업진출시 시사점*, 포스코 경영연구소.

최홍석, 2007. *FTA상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 : 한남대학교.

chong-suk park, 2012. *A Study on the Trade Situations and Improvements between Korea and Mexico*. 무역연구. 8(4).

In-shik Oh, 2006.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sues and Prospects*. 동남아시아연구. 16(1).

한국무역협회,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rade Brief 54.

3. 외국문헌

Carl Shapiro, Halr.Varian, 1996. *Information Rul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achusetts.

Kindleberger. C. P, 1973. *International Economics*. Rechar D, Irwin Inc.

- N. Gregory Mankiw, 1999. *Principle of Economics*. Dryden Press.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2003.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 and Policy, 6/e*. sigmapress.
- Randy Charles Epping, 1995. *Word Economy*,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York.
- Steven Husted, Michael Melvin, 1999. *International Economics*. Addison Wesley.
- WTO,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94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4. 인터넷 웹사이트

- 관세청 ; www.customs.go.kr
- 산업통상자원부 ; www.motie.go.kr
- 외교부 ; www.mofa.go.kr
- 통계청 ; kostat.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 IBRD ; www.worldbank.org
- IMF ; www.imf.org
- OECD ; www.oecd.org
- WTO ; www.wto.org